

# 행정상 · 재정상 처분요구사항

□ 행정상 조치 : 28건 (시정 18건, 주의 8건, 통보 2건)

□ 재정상 조치 : 5건 금6,796,930원 (환수 3건 금4,889,730원 / 환급 2건 금1,907,200원)

처분 번호	관련기관	제 목	행 정 상	비고
			재 정 상	
1	서초소방서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결락 및 조건부 승인 미이행	주 의	
2	''	시설공사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 의	
3	''	부양가족 수당 미지급 및 과지급	시 정 환 수 환 급	금240,000원 금1,400,000원
4	''	회계업무처리 소홀	시 정 환 수	금2,236,800원
5	''	물품 및 공용차량 관리 소홀	시 정	
6	''	전문능력 및 가점 평정점 부여 소홀	시 정	
7	''	보안업무 관리 소홀	시 정	
8	''	신분변동(징계 등)에 따른 보수 등 업무처리 부적정	시 정 환 수 환 급	금2,412,930원 금507,200원
9	''	법인카드 사용·관리 및 세출예산 집행 소홀	시 정	
10	''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 소홀	주 의	
11	''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대상 소방활동 자료조사 관련 업무처리 소홀	시 정	
12	''	재난현장출동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 지급 부적정 및 자녀장학금 지급 소홀	주 의	
13	''	의용소방대 조직관리 및 입대 지원자 개인정보 처리 등 소홀	시 정	
14	''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 조치 소홀	통 보	
15	''	구급활동 이송거부 업무처리 소홀	주 의	

처분 번호	관련기관	제 목	행정상	비고
			재정상	
16	서초소방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교부대상 서류검토 소홀	시 정	
17	''	건축허가 동의업무 서류검토 소홀	시 정	
18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검토 소홀	시 정	
19	''	화재취약대상 화재예방 순찰 소홀	주 의	
20	''	특정소방대상물 예방소방행정 자료조사 소홀	시 정	
21	''	다중이용업소 119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소홀	시 정	
22	''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발급관련 서류검토 소홀	주 의	
23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발급 부적정	시 정	
24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업무처리 소홀	시 정	
25	''	위험물시설 자율 안전관리 지도 업무소홀	시 정	
26	''	화재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화재발생 다중이용업소 확인 점검 소홀	주 의	
27	''	화재현장 출동보고서 작성 소홀	통 보	
28	''	퇴직자 등 개인보호장비 반납 및 공기충전기 가동 점검 소홀	시 정	

# 감사결과 처분요구

1					
기관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원)	
서초소방서 (소방행정과)	2017년	주의			
<b>제 목</b>	<b>기술용역타당성 심사 결락 및 조건부 승인 미이행</b>				
<p><b>[내 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초소방서에서는 감리용역을 시행하면서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결락 및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조건부 승인사항을 미이행 하였다.</li> <li>□ 2016년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계획 알림(기술심사담당관-847호/2016.01.15.),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 기준(기술심사담당관-106656호/2011.07.08.), 기술용역사업 타당성 확보 방안(기술심사담당관-6973호/2004.11.25.)에 따르면 모든 기술용역은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게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하며, 기술용역타당성 심사항목 조건부 승인 요건에 따라 과업의 내용, 범위의 적정성 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합동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용역손해 배상 보험·공제업무 개선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349호/2015.10.17.)에 따르면 최종 용역 보고서에 용역손해배상 보험·공제 증원을 수록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li> <li>□ 따라서 시설공사에 따른 기술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은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게 기술용역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하며, 발주부서와 기술자간 합동회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li> </ul> <p>그런데도 소방행정과에서는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2017.03.27. 안전체험교실 설치공사 감리용역(금5,995,000원)을 시행하면서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게 감리용역 기술용역타당성 심사를 하여야 함에도 결락함.</li> <li>② 2017.03.30. 안전체험교실 설치공사 설계용역을 시행하면서 용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담당공무원과 용역 참여기술자간 합동회의를 개최</li> </ol>					

하여야 함에도 결락하였고, 용역손해배상 보험·공제 증권은 최종 설계용역  
보고서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누락함.

**【 조치사항 】**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감사결과 처분요구

2					
기관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원)	
서초소방서 (소방행정과)	2017년	주의			
제목	<b>시설공사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b>				
<p><b>【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초소방서에서는 감리용역을 시행하면서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결락 및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조건부 승인사항을 미이행 하였다.</li> <li>□ 2016년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계획 알림(기술심사담당관-847호/2016.01.15.),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 기준(기술심사담당관-106656호/2011.07.08.), 기술용역사업 타당성 확보 방안(기술심사담당관-6973호/2004.11.25.)에 따르면 모든 기술용역은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게 타당성심사를 받아야 하며, 기술용역타당성 심사항목 조건부 승인 요건에 따라 과업의 내용, 범위의 적정성 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합동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용역손해배상 보험·공제업무 개선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349호/2015.10.17.)에 따르면 최종 용역 보고서에 용역손해배상 보험·공제 증원을 수록하여 제출 하도록 되어 있다.</li> <li>□ 따라서 시설공사에 따른 기술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은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게 기술용역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하며, 발주부서와 기술자간 합동회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li> </ul> <p>그런데도 소방행정과에서는 기술용역타당성심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2017.03.27. 안전체험교실 설치공사 감리용역(금5,995,000원)을 시행하면서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게 감리용역 기술용역타당성 심사를 하여야 함에도 결락함.</li> <li>② 2017.03.30. 안전체험교실 설치공사 설계용역을 시행하면서 용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담당공무원과 용역 참여기술자간 합동회의를 개최</li> </ol>					

하여야 함에도 결락하였고, 용역손해배상 보험·공제 증권은 최종 설계용역  
보고서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누락함.

**【 조치사항 】**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감사결과 처분요구

3					
기관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원)	
서초소방서 (소방행정과)	2017년	시정	환수 환급	240,000 1,400,000	
<b>제 목</b>	<b>부양가족 수당 미지급 및 과지급</b>				

**【내 용】**

- 서초소방서에서는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미지급 및 과지급 하였다.
- 지방공무원법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30조(수당의 지급),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 기준(가족수당의 변상)에 따르면 가족수당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부양가족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소방공무원은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을 부양가족신고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수당 지급에 대한 관련규정을 확인하여 지급 유·무를 결정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미지급 및 과지급 사례를 예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소방행정과에서는 전직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개인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받아 점검하면서 담당자인 소방사 강영준은 직계존속의 경우 나이 제한(남 60세, 여 55세 이상) 충족시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소홀히 함.

(환수 금240,000원/환급 금1,400,000원)

- 직계비속(둘째 자녀)이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 임에도 급여담당자는 소방교 김영욱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소방교 김영욱은 부양가족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가족수당을 2017.08월~12월(5개월) 금300,000원 미수령함.
- 직계비속(자녀)이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 임에도 급여담당자는 소방교 박기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소방교 박기철은 부양가족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가족수당을 2017.10월~11월(2개월) 금40,000원 미수령함.

- 직계존속(모)이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만55세 이상)임에도 급여담당자는 소방사 임원재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소방사 임원재는 부양가족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가족수당을 2016.04월~2017.12월(21개월) 금420,000원 미수령함.
- 직계존속(모)이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만55세 이상)임에도 급여담당자는 소방교 황교구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소방교 황교구는 부양가족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가족수당을 2016.12월~2017.12월(13개월) 금260,000원 미수령함.
- 직계존속(장인)이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만60세 이상)임에도 급여담당자는 소방교 최재구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소방교 최재구는 부양가족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가족수당을 2017.10월~12월(3개월) 금60,000원 미수령함.
- 직계존속(부)이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만60세 이상)임에도 급여담당자는 소방교 이용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소방교 이용주는 부양가족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가족수당을 2016.12월~2017.12월(13개월) 금260,000원 미수령함.
- 직계비속(장모)이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 임에도 급여담당자는 소방장 구자일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소방장 구자일은 부양가족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가족수당을 2017.10월~12월(3개월) 금60,000원 미수령함.
- 소방사 강영준은 급여담당으로서 본인의 직계존속(부, 모)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기준인(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 요건과 실제 생계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을 확대 해석하여 가족수당을 2017.06월~11월(6개월) 금240,000원 수령함.

※ 본부 전 급여담당(방현기 주무관)에게 지급 가능하다는 구두 답변을 받음.

#### 【 조치사항 】

- 미지급 및 과지급한 가족수당은 처리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감사결과 처분요구

4					
기관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원)	
서초소방서 <small>(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small>	2017년	시정	환수	2,236,800	
<b>제 목</b>	<b>회계업무처리 소홀</b>				

**[내 용]**

- 서초소방서에서는 ① 예산집행실명제 미이행, ② 세출예산 목적 외 물품 구매, ③ 대금e바로 시스템 확인 미흡, ④ 물품 구매에 따른 인지세를 과다하게 부과, ⑤ 안전체험교실 공사를 하면서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사후 정산 하여야 하나 미정산 하였다.
  
- ① 2009년 예산집행실명제 시행지침(e-호조를 통한 예산집행 처리절차), 일반지출 길잡이 요약(예산집행 품의 및 지출원인행위)에 따르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예산집행실명제 이행 및 실명관리카드를 작성 하여야 하며, ②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세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고,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대금e바로 시스템 시행계획(건설총괄부-29431호/2012.12.1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르면 대금e바로 시스템을 통하여 노무비 등 하도급 대상에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고, ④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인지세 적용대상)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 물품 구매라도 완제품인 경우 인지세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사용내역서,

세금계산서, 증빙사진 등을 제출 받아 사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① 발주부서에서는 예산집행실명제 시행지침에 따라 예산집행 품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② 세출예산 집행시에는 예산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고, ③ 발주부서에서는 30일 이상 공사 추진시 대금e바로 시스템을 활용하여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자재비, 노무비 등을 동일한 업체 또는 동일인에게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④ 1천만원 이상 단순 물품(완제품)구매시에는 인지세 부과 기준 적용을 제외 하고, ⑤ 안전체험교실 공사의 안전관리비는 실제 집행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서 사후 정산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소방행정과에서는 회계업무처리를 아래와 같이 부적정하게 함.

- ① 소방행정과에서는 회계업무 처리시 예산집행 품의 절차를 준수하기 위하여 예산집행실명제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미이행함.
- ② 2017.10.26. 긴급구조통제단 물품(비상탈출 미끄럼대) 제작 구매, 2015.12.15. 특수구조장비 등 소모품(방화문 파괴기)을 구매하면서 예산과목 외 물품인 자산취득성 물품으로 구매함.
- ③ 2017.07.31. 안전체험교실 설치공사를 발주하여 2017.08.18. 청목종합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2017.08.28.~11.15. 시공하면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노무비 지급시 근로자명(실명)과 예금주(청목종합건설)가 상이함에도 이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대금을 지급함.
- ④ 2017.02.23. 서초소방서 식탁 구매 등 7건에 대하여 완제품 구매시 인지세를 제외하여야 함에도 인지세를 과다하게 부과함.

○ 인지세부과 내역

(단위 : 원)

연번	건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인지세
1	식탁 등 구매	2017.02.23.	10,150,000	20,000
2	2017년 1분기 구급의약품 구매	2017.03.14.	24,750,000	20,000
3	안마의자 물품 구매	2017.09.28.	16,170,000	20,000
4	심신안정실 비품 구매	2017.10.27.	13,698,460	20,000
5	2016년 1분기 구급의약품 구매	2016.03.22.	13,050,000	20,000
6	심신안정실 물품 구매	2016.05.17.	13,500,000	20,000
7	2016년 2분기 구급의약품 구매	2016.05.30.	14,170,000	20,000

- ⑤ 안전체험교실 공사를 추진하면서 시공사로부터 안전관리비에 대한 사용내역서, 세금계산서, 사진 등 기타 증빙자료를 상세히 제출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일부 감액하지 아니함.(환수 금2,236,800원)

○ 공사내용

(단위:원)

건 명	계약금액	안전관리비	실제 집행금액	과지급 금액	비고
안전체험교실 공사	147,329,600	3,262,000	1,025,200	2,236,800	환수

【 조치사항 】

- 안전관리비는 환수하여 세입처리 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감사결과 처분요구

5					
기관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원)	
서초소방서 (소방행정과)	2017년	시정			
<b>제 목</b>	<b>물품 및 공용차량 관리 소홀</b>				

**【내 용】**

- 서초소방서에서는 물품관리(청구 및 출급증 결탁) 및 공용차량(운행증 미작성)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3조(물품출납공무원), 제55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제65조(표준서식),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표준서식 등), 같은 규칙 제45조(물품의 교부)에 따르면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을 받아야 하며,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2조(장부의 비치), 제14조(지도·감독 등), 제15조(차량관리 부서), 제16조(차량의 사용), 소방장비 관리규칙 제21조(소방장비의 관리상태 확인)에 따르면 공용차량에 대하여 차량유류수불대장, 차량운행일지, 차량사용 신청 및 승인 등 관련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차량담당은 차량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 및 당일 운행거리, 연료주유량 등을 기록하여 공용차량이 효율적으로 운행 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물품관리부서에서는 물품 및 소모품에 대하여 청구 및 출급증을 제출 받아 물품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차량사용 운행증을 신청 후 승인 받아 사용하여야 하고, 공용차량을 사용한 자는 119 행정정보시스템 운행일지에 즉시 운행장소, 운행거리 등을 입력하여 공용차량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소방행정과에서는 물품관리를 위하여 각 부서에서 구매하는 물품 및 소모품에 대하여 물품 배정을 의뢰 받아 배정하여야 함에도 물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출장으로 인하여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차량사용 운행증을 제출 받아 승인 후 공용차량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5년

~2016년에는 운행증 승인(2호차 제외) 절차없이 사용하였으며(2017년부터 운행증 작성), 또한, 업무담당자는 119행정정보시스템에 기록된 공용차량의 운행기록에 대하여 운행장소, 운행거리를 평균 연비와 비교하여 적정하게 운행하였는지 등 확인하여야 함에도 공용차량 관리운영을 소홀히 함.

**【 조치사항 】**

- 각 부서별 전파하여 물품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감사결과 처분요구

6					
기관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원)	
서초소방서 (소방행정과)	2017년	시정			
제목	<b>전문능력 및 가점 평정점 부여 소홀</b>				
<p><b>【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초소방서에서는 2015년~2017년 소방공무원 경력·교육훈련·가점 평정점 부여시 일부 직원에 대하여 전문능력 및 가점 평정점을 누락 하였다.</li> <li>□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0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 시행규칙 제15조(교육훈련성적 평정의 기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2조(전문능력 평정), 2015년~2017년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등 정기평정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경력·교육훈련·가점 평정점 부여시 전문능력 및 가점 평정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li> <li>□ 따라서 자격증 취득 후 소방공무원 경력·교육훈련·가점 평정점 부여시 자격증에 대한 전문능력 점수 부여, 가점 부여, 전문능력 및 가점 중복 부여 등으로 나누어 평정점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li> </ul> <p>그런데도 소방행정과에서는 전문능력 및 가점 평정점 부여를 아래와 같이 소홀히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증을 2016.06.30. 이전 취득자는 전문능력 평정점 1.5점을 부여 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7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경력·교육훈련·가점 평정점 부여시 소방사 박서진은 2016.06.17. 컴퓨터활용능력 2급을 취득하였음에도 전문능력 평정점을 누락하고, 가점 평정점만 부여함.</li> <li>○ 소방장 이영수는 동종의 자격인 위험물기능사와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증을 각각 취득하였으나 평정점 부여시 1개는 전문능력 평정점, 1개는 가점 평정점으로 나누어 평정점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전문능력 평정점만 부여</li> </ul>					

하고 가점 평정점(0.2점)부여는 누락함.

**【 조치사항 】**

- 2017년 하반기 전문능력 및 가점 평정점 부여시 기록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감사결과 처분요구

7					
기관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원)	
서초소방서 <small>(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양재·잠원·우면안전센터)</small>	2017년	시정			
제목	<b>보안업무 관리 소홀</b>				
<p><b>【내용】</b></p> <p><input type="checkbox"/> 서초소방서에서는 보안업무규정 및 서울특별시 보안업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보안업무를 처리하고 있다.</p> <p><input type="checkbox"/>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1조(비밀의 접수·발송), 서울특별시 보안업무처리규칙 제3조(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3조(자체보안내규 수립 시행), 제18조(서약 및 교육), 제34조(비밀의 기록관리), 제36조(대외비문서 관리), 제38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제47조(안전지출 파기계획), 제57조(자체 방호 계획 수립·운영)에 의거 비밀(대외비)문서 접수시 대장 기록과 동시에 문서 접수확인을 하고 결재를 득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비밀(대외비) 파기기한 도래시 파기방법 및 절차에 따라 파기하여야 하며, 자체 보안내규 등 각종 보안관련 계획을 자체 실정에 맞도록 수립·정비하여야 함에도,</p> <p><input type="checkbox"/> 각 부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안업무를 소홀히 함.</p> <p>① 소방행정과에서는 2017년도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 자체 실정에 맞도록 보안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수립하여야 함에도, 심의·의결 과정을 생략하고 임의적으로 수립하였으며, 문서등록 없이 내부 결재 처리하고 산하기관에 배포를 하지 아니하여 각 부서 및 안전센터에서는 2016년 이후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없이 운영됨.</p> <p>② 또한, ‘안전지출 파기계획’은 2011년 이후 정비되지 아니한 채 각 부서별 안전지출 파기순위표에 따른 실제 위치도 작성없이 부적정하게 수립 되었으며, 재난관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밀문서(화학물질 사고대응 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판 배포/2003.08.20.)는 현 실정과 맞지 아니하여 재분류에 의한 파기 심의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보안심의없이 매년 보안심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하는 등 보안업무를 소홀히 함.</p>					



③ 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양재·잠원·우면안전센터에서는 비밀(대외비)문서(2016. 암호자재 변경운용 통보 등 총 7건)가 2017.12월 감사일 현재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채 관리되고 있는 등 보안업무를 소홀히 함.

연번	소속	보안지적사항	내용	비고
1	소방행정과	보안문서 미접수(미결제)	2016. 소방무선통신 암호자재 변경운용 통보	
2	재난관리과		2016. 보안업무추진계획	
3	현장대응단		2016. 소방무선통신 암호자재 변경운용 통보	
4	양재안전센터		2016. 소방무선통신 암호자재 변경운용 통보	
5	잠원안전센터		2017. 을지연습 추진계획 등 2건	
6	우면안전센터		2017. 을지연습 추진계획	

④ 잠원안전센터에서는 비밀보관책임자 변경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보유현황을 정확히 기재하여 인계·인수 후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인계·인수 날인 누락 및 보안담당관의 확인 결락 등 보안업무 처리를 소홀히 함.

**【조치사항】**

- 미정비된 보안계획은 자체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도록 하고, 관리가 미흡한 대장 및 문서는 보완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감사결과 처분요구

8																							
기관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원)																			
서초소방서 (소방행정과)	2017년	시정	환수 환급	금2,412,930원 금507,200원																			
제목	<b>신분변동(징계 등)에 따른 보수 등 업무처리 부적정</b>																						
<p><b>【내용】</b></p> <p><input type="checkbox"/> 서초소방서에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하여 직원의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p> <p><input type="checkbox"/>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5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정근수당), 제13조(위험근무수당), 제14조(특수업무수당), 제18조의5(연가보상비),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세출예산집행기준 5. 직무수행경비(5-3. 특정업무경비)에 의하여 신분변동 및 1개월 이상 장기 교육 등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사고자에 대해 보수(봉급 및 수당) 및 직무수행경비를 정확히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p> <p><input type="checkbox"/> 소방행정과에서는 징계처분자 및 1개월 이상 교육자에 대하여 보수를 다음과 같이 부적정하게 지급함.(환수 금2,412,930원/환급 금507,200원)</p> <p>①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중에 징계(견책)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2013.06.10.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2013.07월 보수에 정근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함.(환수 금1,326,200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지방공무원 수당등의 업무처리기준 발체</p> <p>○ 견책 수당등을 전액 지급한다. 다만, 정근수당의 경우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중에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p> <p>*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지급대상 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지급대상 기간은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p> </div> <p style="margin-top: 10px;">※ 정근수당 과지급 현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소속</th> <th style="text-align: center;">직급</th> <th style="text-align: center;">성명</th> <th style="text-align: center;">징계양정</th> <th style="text-align: center;">징계처분일 (처분기관)</th> <th style="text-align: center;">전입일 (현소속기관)</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급월 지급대상기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과다지급 (환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현장대응단</td> <td style="text-align: center;">소방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정현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견책</td> <td style="text-align: center;">2013.06.10. (서초)</td> <td style="text-align: center;">2016.07.14. (서초)</td> <td style="text-align: center;">2013.07.01. (2013.01.01.~2013. 06.30)</td> <td style="text-align: center;">1,326,200</td> <td style="text-align: center;">수감기간 이전 사항으로 환수조치 ※ 환수금액 : 정근수당전액</td> </tr> </tbody> </table>						소속	직급	성명	징계양정	징계처분일 (처분기관)	전입일 (현소속기관)	지급월 지급대상기간	과다지급 (환수)	비고	현장대응단	소방장	정현용	견책	2013.06.10. (서초)	2016.07.14. (서초)	2013.07.01. (2013.01.01.~2013. 06.30)	1,326,200	수감기간 이전 사항으로 환수조치 ※ 환수금액 : 정근수당전액
소속	직급	성명	징계양정	징계처분일 (처분기관)	전입일 (현소속기관)	지급월 지급대상기간	과다지급 (환수)	비고															
현장대응단	소방장	정현용	견책	2013.06.10. (서초)	2016.07.14. (서초)	2013.07.01. (2013.01.01.~2013. 06.30)	1,326,200	수감기간 이전 사항으로 환수조치 ※ 환수금액 : 정근수당전액															

② 보수지급시 장기교육자(1개월 이상) 및 휴직 등 사고자에 대하여 직무수행경비 성격인 특정업무경비(방호활동비 및 구조구급활동비)는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실비 변상인 연가보상비는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교육훈련법에 의한 직무 및 전문교육의 경우에 한하여 위험수당 및 특수업무수당(화재진화수당)은 지급하여야 함에도, 복무담당자와 급여담당자가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인명구조사반(5주) 등 직무교육자와 휴직자 11명에 대하여 보수를 과소·과다 지급함.(환수 1,086,730원/환급 507,200원)

연번	소속	계급	성명	기간	사고(교육 등)명	특정업무경비		특수업무수당		실비변상 연가보상비	총액	비고
						방호활동비	구조구급	위험수당	화재진화			
1	현장대응단	소방사	김수현	20160222-20160426	응급구조사(2급)			51,440	68,590	-90,260	29,770	급여계산소홀 복무일수산정소홀
2	현장대응단	소방사	박현진	20160222-20160426	응급구조사(2급)			51,440	68,590	-47,320	72,710	급여계산소홀 복무일수산정소홀
3	현장대응단	소방위	전여정	20160307-20160527	화재조사반	-137,100		160,650	214,200	-78,700	159,050	급여계산소홀 복무일수산정소홀
4	서초안전센터	소방사	이수민	20160502-20160701	병원임상수련					-56,040	-56,040	급여계산소홀 복무일수산정소홀
5	현장대응단	소방사	이성호	20160530-20160701	인명구조사(2급)	-186,460	-109,690	-5,820			-301,970	급여계산소홀
6	현장대응단	소방장	이은희	20150521~현재까지	육아휴직	245,670					245,670	급여계산소홀
7	현장대응단	소방장	이덕용	20141027-20171027	육아휴직	-27,420					-27,420	급여계산소홀
8	현장대응단	소방교	이수아	20150720-20161020	출산휴가, 육아휴직	-142,590	-135,480				-278,070	급여계산소홀
9	현장대응단	소방교	설혜련	20160523-20171002	병가,출산휴가 육아휴직	-224,840					-224,840	급여계산소홀
10	현장대응단	소방사	박애련	20160523~현재까지	출산휴가, 육아휴직	-170,000		-60,000	56,780		-173,220	급여계산소홀
11	양재안전센터	소방장	주용섭	20151101~현재까지	지원(체험관, 현장대응단)			-25,170			-25,170	급여계산소홀
	합 계					환급(4건) 507,200원 / 환수(7건) -1,086,730원						

\* 과다·과소 지급액 산출근거(별도첨부) : 기지급액(실지급액) 산출

**【조치사항】**

- 과다·과소 지급한 수당은 환수 또는 환급조치 하도록 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감사결과 처분요구

9					
기관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원)	
서초소방서 <small>(소방행정과, 양재·서초·잠원·우면안전센터)</small>	2017년	시정			
제목	<b>법인카드 사용·관리 및 세출예산 집행 소홀</b>				
<p><b>【내용】</b></p> <p><input type="checkbox"/> 서초소방서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여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있다.</p> <p><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4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3.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의하면 신용카드 사용시 매월 결제일 도래전 지급을 결정하여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대금을 입금하고,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 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과장)까지 보고(결재)하도록 하며, 4. 신용카드 보관·관리에 따르면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오인하여 잘못 사용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한 후 정당한 카드로 새로 결제하여야 한다.</p> <p><input type="checkbox"/> 서초소방서에서는 종합감사 전 자체적으로 각 부서 사용중인 통장현황 및 통장 입출금 내역(횡령, 유용, 오입금 등)에 대하여 법인카드통장 등 입출금내역 자체 확인계획 알림(소방행정과-5708호/2017.04.19.)에 의하여 자체 확인 실시 하였음에도 2017.12월 감사일 현재 확인한 바, 일부 부서에서는 채주를 혼동한 착오 입금, 품의금액과 카드결제 금액의 불일치, 신용카드 결제일 이전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발생 등으로 통장 잔액이 부족하거나 과입금 되어 있는 등 아래와 같이 업무를 소홀히 함.</p> <p>① 양재안전센터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용카드 결제 계좌 잔고가 금161,687원 과입금 되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상없음으로 처리함.</p>					

순번	카드계좌 내역			e호조		집행내역	발생원인 및 과정
	거래일자	출금금액	입금금액	지급일자	지급금액		
1	2011.12.31.		6,657			○ 원인불명의 미처리된 금액(9,357원)이 통장에 잔고로 남아 있음. <수감기간 이전사항임>	○ 원인불명의 금액이 미처리되어 9,357원 과입금
2	2012.08.22. 2013.02.22. 2013.05.14. 2013.06.14. 2013.12.07.	39,500 12,804 11,089 78,100 19,750	40,000 12,954 11,214 78,105 20,000	2012.08.22. 2013.02.22. 2013.05.14. 2013.06.14. 2013.12.07.	40,000 12,954 11,214 78,105 20,000	○ 2012.08월 이후 주유소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주유 할인을 받았으나, 대금지급을 할인액을 포함하여 지급함.(1,030원) <수감기간 이전사항임>	○ 할인된 금액이 남아있어 1,030원 과입금
3	2016.08.23.		96,600	2016.08.23.	96,600	○ 2016.08월 방화복 세제구입으로 법인카드 결제(96,600원/2016.08.23./하모니마트)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실제로는 '외상매출' 영수증으로 증빙 처리하고 대금을 카드결제 계좌로 입금함. <담당자 최국진 / 확인자 마행열>	○ 카드승인 미처리로 96,600원 과입금
4	2016.09.09.	96,800	93,500	2016.09.09.	93,500	○ 2016.09월 사무용품으로 법인카드 결제(96,800원/2016.09.09./대림철물)하고, 대금을 3,300원 부족한 93,500만 입금함. <담당자 박진선 / 확인자 이종대>	○ 과소 입금으로 3,300원 부족
5	2016.12.21.	96,600	99,600	2016.12.21.	99,600	○ 2016.12월 사무용품으로 법인카드 결제(96,600원/2016.12.21./문화문기센터)하고, 3,000원 과다한 금액 99,600 입금함. <담당자 박진선 / 확인자 마행열>	○ 과다 입금으로 3,000원 과입금
6	2017.03.15.		55,000	2017.03.15.	55,000	○ 2017.03월 구급차 블랙박스 소모품 구입으로 법인카드 결제(55,000원/2017.03.14./크리에이티브 인피니티)하고, 대금을 지급함. <전산오류로 담당자 관리소홀 해당없음>	○ 카드사 전산상의 오류로 승인처리가 되지 않아, 계좌에 55,000원 과입금
7	2017.04.19.					○ 서초소방서에서는 종합감사 전 자체적으로 각 부서 사용중인 통장현황 및 통장 입출금 내역(형명,유용,오입금 등)에 대하여 일제 확인[소방행정과-5708(2017.04.19.)호 '법인카드통장 등 입출금내역 자체 확인 알림']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상없음으로 보고함. <담당 심형석,박진선,최국진 / 확인자 마행열>	

② 서초안전센터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용카드 결제 계좌 잔고가 금256,000원 부족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상없음으로 처리함.

순번	카드계좌 내역			e호조		집행내역	발생원인 및 과정
	거래일자	출금금액	입금금액	지급일자	지급금액		
1	2011.03.29.		50,000	2011.03.29.	50,000	○ 2011.03월 법인카드 결제를 취소(50,000원/2011.03.29./앨범에드)하였으나, 일상경비 지급 처리함. <수감기간 이전사항임>	○ 대금 착오 지급으로 50,000원 과입금
2	2017.02.16.	46,000		2017.02.16.	46,000	○ 2017.02월 차고파손으로 난방을 위한 등유를 구입하면서 법인카드 결제(46,000원/2017.02.16./대성석유)하였으나, 공공요금 자동이체 계좌로 지급함. <담당자 박기철 / 확인자 이상구>	○ 결제계좌 착오입금으로 46,000원 부족
3	2017.04.19.					○ 서초소방서에서는 종합감사 전 자체적으로 각 부서 사용중인 통장현황 및 통장 입출금 내역(형명,유용,오입금 등)에 대하여 일제 확인[소방행정과-5708(2017.04.19.)호 '법인카드통장 등 입출금내역 자체 확인 알림']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상없음으로 보고함. <담당 박기철,김효식,최창욱 / 확인자 이상구>	
4	2017.05.17.	100,000		2017.05.17.	100,000	○ 2017.05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 결제(100,000원/2017.05.17./춘향골 추어탕)하고, 법인카드 결제계좌가 아닌 사업주 계좌로 지급함. <담당자 김효식 / 확인자 이상구>	○ 결제계좌 착오입금으로 100,000원 부족
5	2017.08.21.	160,000		2017.08.21.	160,000	○ 2017.08월 울지연습 금량비를 법인카드 결제(160,000원/2017.08.21./참설농탕)하였으나, 법인카드 결제계좌가 아닌 사업주 계좌로 지급함. <담당자 신대희 / 확인자 신석철>	○ 결제계좌 착오입금으로 160,000원 부족

③ 잠원안전센터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용카드 결제 계좌 잔고가 금71,900원 부족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상없음으로 처리함.

순번	카드계좌 내역			e호조		집행내역	발생원인 및 과정
	거래일자	출금금액	입금금액	지급일자	지급금액		
1	2015.06.01.	63,000		2015.06.01.	63,000	○ 2015.06월 특근매식비로 법인카드결제(63,000원/2015.06.01./가미술순두부)하고, 신용카드 결제계좌가 아닌 사업주 계좌로 입금함.	○ 대금 착오 지급으로 63,000원 부족

순번	카드계좌 내역			e호조		집행내역	발생원인 및 과정
	거래일자	출금금액	입금금액	지급일자	지급금액		
2	2015.07.07. 2015.07.08.	98,500 98,500	98,500	2015.07.08.	98,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담당자 이남우, 확인자 조홍섭&gt;</li> <li>◦ 2015.07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법인카드결제(98,500원/2015.07.07./큐브닷컴)함에 있어 이종결제 처리됨.</li> <li>◦ &lt;담당자 김덕주, 확인자 조홍섭&gt;</li> <li>◦ 2015.09월 소방장비개발 질물제작비로 법인카드결제(90,000원/2015.09.25./애니테크)하고, 소방행정과에서 비용을 입금하였으나, 잠원안전센터에서 비용을 이종으로 처리함.</li> <li>◦ &lt;담당자 김도현, 확인자 조홍섭&gt;</li> <li>◦ 2015.11월 공공요금(케이블티브이)을 법인카드결제(48,400원/2015.11.15./서초케이블티브이)하고, 실제 비용은 400원 부족한 48,000원만 입금처리함</li> <li>◦ &lt;담당자 진명섭, 확인자 홍성모&gt;</li> <li>◦ 서초소방서에서는 종합감사 전 자체적으로 각 부서 사용중인 통장현황 및 통장 입출금 내역(회령, 유용, 오입금 등)에 대하여 일제 확인[소방행정과-5708(2017.04.19.)호 '법인카드통장 등 입출금 내역 자체 확인 알림' ]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상없음으로 보고함.</li> <li>◦ &lt;담당자 유신호,진명섭,강만복 / 확인자 홍성모&gt;</li> </ul>	◦ 카드 이종결제로 98,500원 부족
3	2015.09.25.	90,000	90,000 90,000	2015.10.02. 2015.10.07.	90,000 9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담당자 김도현, 확인자 조홍섭&gt;</li> <li>◦ 2015.11월 공공요금(케이블티브이)을 법인카드결제(48,400원/2015.11.15./서초케이블티브이)하고, 실제 비용은 400원 부족한 48,000원만 입금처리함</li> <li>◦ &lt;담당자 진명섭, 확인자 홍성모&gt;</li> <li>◦ 서초소방서에서는 종합감사 전 자체적으로 각 부서 사용중인 통장현황 및 통장 입출금 내역(회령, 유용, 오입금 등)에 대하여 일제 확인[소방행정과-5708(2017.04.19.)호 '법인카드통장 등 입출금 내역 자체 확인 알림' ]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상없음으로 보고함.</li> <li>◦ &lt;담당자 유신호,진명섭,강만복 / 확인자 홍성모&gt;</li> </ul>	◦ 대금입금 이종처리로 90,000원 과입금
4	2015.11.15.	48,400	48,000	2015.11.15.	48,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담당자 김도현, 확인자 조홍섭&gt;</li> <li>◦ 2015.11월 공공요금(케이블티브이)을 법인카드결제(48,400원/2015.11.15./서초케이블티브이)하고, 실제 비용은 400원 부족한 48,000원만 입금처리함</li> <li>◦ &lt;담당자 진명섭, 확인자 홍성모&gt;</li> <li>◦ 서초소방서에서는 종합감사 전 자체적으로 각 부서 사용중인 통장현황 및 통장 입출금 내역(회령, 유용, 오입금 등)에 대하여 일제 확인[소방행정과-5708(2017.04.19.)호 '법인카드통장 등 입출금 내역 자체 확인 알림' ]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상없음으로 보고함.</li> <li>◦ &lt;담당자 유신호,진명섭,강만복 / 확인자 홍성모&gt;</li> </ul>	◦ 대금입금 이종처리로 400원 부족
5	2017.04.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담당자 김도현, 확인자 조홍섭&gt;</li> <li>◦ 2015.11월 공공요금(케이블티브이)을 법인카드결제(48,400원/2015.11.15./서초케이블티브이)하고, 실제 비용은 400원 부족한 48,000원만 입금처리함</li> <li>◦ &lt;담당자 진명섭, 확인자 홍성모&gt;</li> <li>◦ 서초소방서에서는 종합감사 전 자체적으로 각 부서 사용중인 통장현황 및 통장 입출금 내역(회령, 유용, 오입금 등)에 대하여 일제 확인[소방행정과-5708(2017.04.19.)호 '법인카드통장 등 입출금 내역 자체 확인 알림' ]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상없음으로 보고함.</li> <li>◦ &lt;담당자 유신호,진명섭,강만복 / 확인자 홍성모&gt;</li> </ul>	

④ 우면안전센터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용카드 결제 계좌 잔고가 금614,400원 부족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상없음으로 처리함.

순번	카드계좌 내역			e호조		집행내역	발생원인 및 과정
	거래일자	출금금액	입금금액	지급일자	지급금액		
1	2014.12.25. 2014.12.25.	228,000 77,000		2014.12.26. 2014.12.26.	228,000 77,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12월 출동간식비와 특근매식비를 현금영수증 처리하여야 하나 법인카드결제(228,000원/77,000원/2014.12.25./만리향)하고, 대금을 사업주 계좌로 입금처리함.</li> <li>◦ &lt;담당 김도현 / 확인자 권기연&gt;</li> <li>◦ 서초소방서에서는 종합감사 전 자체적으로 각 부서 사용중인 통장현황 및 통장 입출금 내역(회령, 유용, 오입금 등)에 대하여 일제 확인[소방행정과-5708(2017.04.19.)호 '법인카드통장 등 입출금내역 자체 확인 알림' ]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상없음으로 보고함.</li> <li>◦ &lt;담당 최경일, 강태의, 윤지호 / 확인자 권기연&gt;</li> <li>◦ 2017.7월 소방활동지원비로 법인카드결제(309,400원/2017.07.21./웅제유통)하면서 매출전표가 제대로 출력되지 않아 취소와 승인을 반복하면서 이종으로 승인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함.</li> <li>◦ &lt;담당 강태의 / 확인자 기현섭&gt;</li> </ul>	◦ 결제계좌 착오입금으로 305,000원 부족
2	2017.04.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담당 김도현, 확인자 권기연&gt;</li> <li>◦ 서초소방서에서는 종합감사 전 자체적으로 각 부서 사용중인 통장현황 및 통장 입출금 내역(회령, 유용, 오입금 등)에 대하여 일제 확인[소방행정과-5708(2017.04.19.)호 '법인카드통장 등 입출금내역 자체 확인 알림' ]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상없음으로 보고함.</li> <li>◦ &lt;담당 최경일, 강태의, 윤지호 / 확인자 권기연&gt;</li> <li>◦ 2017.7월 소방활동지원비로 법인카드결제(309,400원/2017.07.21./웅제유통)하면서 매출전표가 제대로 출력되지 않아 취소와 승인을 반복하면서 이종으로 승인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함.</li> <li>◦ &lt;담당 강태의 / 확인자 기현섭&gt;</li> </ul>	
3	2017.07.21. 2017.07.21.	309,400 309,400	309,400	2017.07.21.	309,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담당 김도현, 확인자 권기연&gt;</li> <li>◦ 서초소방서에서는 종합감사 전 자체적으로 각 부서 사용중인 통장현황 및 통장 입출금 내역(회령, 유용, 오입금 등)에 대하여 일제 확인[소방행정과-5708(2017.04.19.)호 '법인카드통장 등 입출금내역 자체 확인 알림' ]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상없음으로 보고함.</li> <li>◦ &lt;담당 최경일, 강태의, 윤지호 / 확인자 권기연&gt;</li> <li>◦ 2017.7월 소방활동지원비로 법인카드결제(309,400원/2017.07.21./웅제유통)하면서 매출전표가 제대로 출력되지 않아 취소와 승인을 반복하면서 이종으로 승인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함.</li> <li>◦ &lt;담당 강태의 / 확인자 기현섭&gt;</li> </ul>	◦ 카드 이종 승인으로 결제계좌에서 대금이 출금되어 309,400원 부족

⑤ 소방행정과에서는 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시 매월 결제일 도래 전 지급을 결정하여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여야 함에도, 2017.06월 표창장 부상품 구입과 퇴임식 행사물품 구입 등으로 신용카드로 결제(4건 금1,600,000원) 하면서 물품검수 등 대금지급 관련 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감사기간 중 발견하여 처리하였으며, 총 17건에 대하여 14일~06개월 기간을 반복적으로 지연처리 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절차를 소홀히 함.

**【조치사항】**

- 채주 혼동한 계좌 착오입금 등 법인카드 사용·관리 및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처리 건은 정정하여 처리토록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기관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원)	
서초소방서 <small>(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방배·양재·우면안전센터)</small>	2017년	주 의			
제 목	<b>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 소홀</b>				
<p><b>【내 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초소방서에서는 실전 같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훈련을 통하여 현장에 강한 정예대원을 양성하여 선제적인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화재 진압 등 전문기술의 지속적 연마를 위한 일상훈련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li> <li>□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등)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도별 소방관서 자체 소방훈련 실시 계획에 의하면 현장대응단 및 관할 안전센터에서는 연 1회 이상 관할구역 내의 공공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제 대피훈련 및 출동경로 선정, 소방차량 부서위치 선정 등을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li> <li>□ ① 재난관리과에서는 2015년 공공기관 합동 현지적응훈련 계획을 수립 하면서 2015년 소방훈련 기본 운영 계획 보고(알림)(재난관리과-1008호/2015.02.11.)에 따라 소방훈련 기본 운영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대응총괄팀 훈련계획 담당자는 6개월이 경과한 2015.08.27.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하였고, 훈련 실시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상주인원 10인 미만을 제외한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196개소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훈련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에도 19개소에 대한 훈련계획만 수립하여 관할부서에서 훈련을 실시하도록 문서를 시행하는 등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함.</li> </ul>					

② 현장대응단에서는 2016년 중 서래초등학교에 대한 공공기관 합동 소방 훈련 실시 결과가 근무일지에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여 훈련을 실시하지 않음.

방배·양재·우면안전센터에서는 2016년 중 방일초등학교 등 9개소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합동 소방훈련 실시 결과 자료에 의하면 대상별로 훈련 실시 결과 보고가 완료 되었거나 훈련 출소·귀소 등의 사항이 근무일지 상에는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 훈련대상을 방문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됨.

○ 2016년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미실시 내역

연번	대상명	훈련 실시 일자 (결과 문서번호)	지적내용	관할부서	담당자	감독자
1	서래초등학교	2016-05-27	합동소방훈련 실시 결과 보고가 완료되어 있거나 훈련 실시관련 사항이 근무일지에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현장을 방문하여 훈련을 실시하지 않음	현장대응단	기현섭	이재동
2	방일초등학교	2016-06-03	〃	방배	박재익	배상관
3	서울메트로본사	2016-12-05	〃	방배		
4	양재시민의숲역	2016-07-21	〃	양재	허경영 김명수	마행렬
5	한국국제협력단 연수원	2016-12-07	〃	양재		
6	농협화훼공판장	2016-11-16	〃	양재		
7	영동중학교	2016-05-11	〃	우면	신석철 신학철 이준기	권기연
8	예원유치원	2016-06-24	〃	우면		
9	서초구립한우리 정보문화센터	2016-10-21	〃	우면		
10	서초구청	2016-08-24	〃	우면		

【 조치사항 】

○ 재난관리과 및 현장대응단·방배·양재·우면안전센터에서는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기관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원)	
서초소방서 (예방과)	2017년	시정			
제 목	<b>완공검사증명서 발급 대상 소방활동 자료조사 관련 업무처리 소홀</b>				
<p><b>【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초소방서에서는 화재의 경계·진압 및 인명구조·구급활동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인 신축 건축물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자료를 토대로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작성한 후 소방안전지도에 탑재하여 관리하고 있다.</li> <li>□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 제10조(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및 관리요령), 제11조(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결과조치) 및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2조(소방활동 자료조사)에 의하면, 각종 재난발생시 소방 활동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형화재 취약대상 및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한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활동 정보카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정리하도록 되어 있고, 신축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후 30일 이내에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작성하여 화재진압 등 현장 활동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li> <li>● 또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자료조사)의 규정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작성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안전지도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li> <li>□ 예방과에서는 2015.09.08.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가 발급된 서초구 신반포로 176 소재 센트럴시티 등 7개소의 증축 및 대수선 건축물에 대하여</li> </ul>					

관련부서 통보를 누락하여 소관부서에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현장대응단에서는 서초구 신반포로23길 76 소재 신축 건축물인 잠원하우징 건물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감사일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음.

○ 신축 건축물 등 소방활동 자료조사 미실시 내역

연번	대상명	주소	사용승인(완공 검사증명) 일자	자료조사 일 자	관할부서	담당자	감독자
1	센트럴시티 (5층 대수선)	신반포로 176	2015-09-08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사실 관련부서 미통보	예방과	안성일	강기홍
2	센트럴시티 (지1층 3공구)	신반포로 176	2015-09-08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사실 관련부서 미통보	예방과	안성일	강기홍
3	최우관 건물	방배로10길 10-12	2016-10-14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사실 관련부서 미통보	예방과	안성일	강기홍
4	잠원초등학교	신반포로16길 15-25	2016-11-10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사실 관련부서 미통보	예방과	안성일	강기홍
5	송릉빌딩	반포대로9길 30	2016-05-02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사실 관련부서 미통보	예방과	안성일	강기홍
6	구구플라워 건물	연남길 35	2016-08-29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사실 관련부서 미통보	예방과	안성일	강기홍
7	국립국악원 우면당	남부순환로 2364	2016-10-10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사실 관련부서 미통보	예방과	안성일	강기홍
8	잠원하우징 건물	신반포로23길 76	2017-08-01	자료조사 미실시	현장대응단	배영준	강기홍

【 조치사항 】

- 현장대응단에서는 잠원하우징 건물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예방과에서는 신축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사실을 관련 부서에 통보한 후 해당부서에서는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기관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원)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2017년	주 의			
제 목	<b>재난현장출동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 지급 부적정 및 자녀장학금 지급 소홀</b>				

**【내 용】**

- 서초소방서에서는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 대응 및 복구활동 지원, 소방홍보, 봉사활동 등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9개대 177명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장학금 지원)에 의하면 소방재난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의용소방대원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고, 조례 시행규칙 제 11조(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는 때에는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이미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되어 있다.
- ◎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무)에 의하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를 보조 등이고, 같은 법률 제15조(소집수당 등)에 따라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같은 법률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소집수당 등)의 규정에 의하면 소집수당은 지방소방위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하며,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소집수당)에 의하면 소집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방출동(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소집수당은 임무를 수행한 분 단위까지 월간으로 계산하되, 합산시간의 분단위 이하는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소집수당의

청구)에 따라 증빙자료는 ‘소방출동(활동)기록부’에 따르도록 하였다.

- ① 재난관리과에서는 2016년 3분기·4분기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잠원지역대 김현숙 등 8명의 대원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양재고등학교 등 5개 고등학교에 타 장학금 등 지급 사실조회 여부에 따른 결과가 통보되지 아니하였음에도 3분기·4분기 장학금을 지급함.

○ 2016년도 타 장학금 등 지급 사실 조회 미확인 내역

연번	의소대원 성명 (소속대)	학교명 (학년)	3분기 (문서번호)	4분기 (문서번호)	담당자	감독자
	자녀 성명					
1	김현숙(잠원지역대)	양재고등학교 (3-5)	사실 조회 미확인	사실 조회 미확인	하충식	한희수
	김채리					
2	박현주(양재지역대)	언남고등학교 (2-1)	〃	〃		
	진현수					
3	이정화(본대)	상문고등학교 (2-5)	〃	〃		
	장형석					
4	임은자(양재지역대)	서울고등학교 (3-11)	〃	〃		
	문인수					
5	조미영(잠원지역대)	서울고등학교 (1-11)	〃	〃		
	정기찬					
6	권영자(반포지역대)	상문고등학교 (1-11)	〃	〃		
	장재현					
7	김소연(전문대)	양재고등학교 (2-11)	〃	〃		
	민승하					
8	정영희(양재지역대)	중산고등학교 (2-1)	〃	〃		
	이상혁					

- ② 2016년 01월~12월 재난(화재)현장에 출동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소집수당을 지급하면서 각 대원이 화재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화재현장에서 활동한 시간을 확인하여 소방출동(활동)기록부에 기재하고 그 증빙에 따라 1일 4시간 이내 월중 총 활동시간을 합산하여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1시간 미만(분단위 시간 제외)은 소집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시간에 해당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개인별로 월중 총 활동시간을 합산하여 분단위 시간은 제외하고 시간 단위만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횡수를 기준으로 횡수당 1시간에 해당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등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 지급과 관련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

○ 의용소방대 화재현장 출동 소집수당 지급 내역

구분 월별	화재현장 출동인원 (명)	활동시간	소집수당 지급시간	소집수당 지급액 (원)	지적사항	담당자	감독자
총계	134	36	199	2,089,500	○ 1시간 미만 활동시에도 소집수당 1시간 지급	하충식	한희수
2016. 1월	8	6	15	157,500			

구분 월별	화재현장 출동인원 (명)	활동시간	소집수당 지급시간	소집수당 지급액 (원)	지적사항	담당자	감독자
2016. 2월	8	1	11	115,500	○ 개인별 월중 활동시간을 합산하여 분단위 미만은 제외하여 지급 하지 않고 1회 출동시 1시간으로 계산 하여 소집수당 지급  ※ 지급예 : 월중 활동시간 계산 - 1회차 활동시간 : 24분 - 2회차 활동시간 : 41분 - 3회차 활동시간 : 40분 - 4회차 활동시간 : 33분 - 5회차 활동시간 : 40분 ▶ 총 월중 활동시간 : 2시간 58분 ▶ 총 지급가능 시간 : 2시간 ▶ 실 지급시간 : 5시간		
2016. 3월	14	7	20	210,000			
2016. 4월	14	1	17	178,500			
2016. 5월	6	0	7	73,500			
2016. 6월	6	0	7	73,500			
2016. 7월	13	2	18	189,000			
2016. 8월	13	9	24	252,000			
2016. 9월	16	0	22	231,000			
2016. 10월	14	5	26	273,000			
2016. 11월	10	1	10	105,000			
2016. 12월	12	4	22	231,000			

【 조치사항 】

- 재난관리과에서는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및 소집수당 지급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기관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원)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2017년	시정			
제목	<b>의용소방대 조직관리 및 입대 지원자 개인정보 처리 등 소홀</b>				

**【내용】**

- 서초소방서에서는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 대응 및 복구활동 지원, 소방홍보, 봉사활동 등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9개대 177명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결원 발생시 소정의 모집 절차를 거쳐 의용소방대원으로 임용하고 있다.
  
- ㉠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15조(신분증명서 등)에 의하면 의용소방대원으로 임용된 신규 대원에게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신분증명서 발급) 제2항에 의하여 대원이 퇴직하거나 면직 또는 해임된 때에는 신분증을 발급권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4조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의 규정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5조(임명구비서류)에 따라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㉔ 의용소방대법 제6조(조직)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조직)와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정원)의 규정에 의하면 남성 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또는 혼성의용소방대의 정원은 각 40명 이내로 들수 있고, 지역대와 전문대는 각 20명 이내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원의 결원 발생시 각종 재난현장 대응 및 복구활동 지원, 봉사활동 등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충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① 재난관리과에서는 2017.01.09. 신규 임용한 본대 김혜은 등 6명의 대원 및 2017.03.31. 임용된 우면지역대 김삼희 등 3명의 대원에게 2017.05.24. 의용소방대원 신분증을 지연하여 발급하였고, 본대 김은숙 대원을 전문대로 전문대 민병순 대원은 본대로 2017.01.09. 부서지가 변경 발령 되었음에도 2017.05.24. 의용소방대원 신분증을 지연하여 발급하였을 뿐 아니라, 여성대 구호부장 유경화 대원은 1998.03.19. 최초 신규 임용된 자로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2015.04.20. 재발급된 이후 2015.10.15. 우면지역대 홍보반장에서 여성대 구호부장으로 발령시 발급하여야 하는 신분증을 2017.05.24. 발급하여 주는 등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발급 업무를 소홀히 처리함.

○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지연 발급 내역

연번	임용일자	신분증 발급일자	발급대상자 성명	담당자	감독자
1	2017.01.09.	2017.05.24. (6명 지연 발급)	김혜은, 명정현, 백현아, 심계남, 이수, 이영희	백인철	김상철
2	2017.03.31.	2017.05.24. (3명 지연발급)	김삼희, 방극환, 최인석		
3	2017.01.09.	2017.05.24. (부서지 변경자 2명 지연 발급)	김은숙 : 전문대 ⇒ 본대 민병순 : 본대 ⇒ 전문대		
4	2015.10.15.	2017.05.24. (우면 홍보반장⇒여성대 구호부장 발령)	유경화		

② 2015.12.25. 임기가 만료되어 퇴직한 남성대장 장도금 및 2015.12.22. 퇴직한 여성대 현미경 대원 등 10명의 대원은 감사일 현재까지 퇴직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반납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미반납 내역

연번	소속대	성명	해임일자 (퇴직일자)	반납일자	담당자	감독자
1	본대 (남성대장)	장도금	2015-12-25	반납 조치 안됨	하충식	김재근

연번	소속대	성명	해임일자 (퇴직일자)	반납일자	담당자	감독자
2	여성대	현미경	2015-12-22	〃	〃	〃
3	잠원지역대	유재희	2015-12-22	〃	〃	〃
4	본대	유승은	2015-12-22	〃	〃	〃
5	양재지역대	김지원	2015-12-22	〃	〃	〃
6	반포지역대	김민영	2016-03-21	〃	〃	한희수
7	반포지역대	김애숙	2016-03-21	〃	〃	〃
8	여성대	오복자	2016-03-21	〃	〃	〃
9	잠원지역대	정은숙	2016-03-21	〃	〃	〃
10	전문계	임종백	2016-11-18	〃	〃	〃
11	서초지역대	박종길	2016-11-18	〃	〃	〃

③ 2016~2017년 중 총 5회에 걸쳐 신규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하면서 입대 지원자가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 제출시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를 제출한 21명의 지원자에 대하여 담당자가 직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본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고 동의하지 아니한 지원자에 한하여 주민등록 등본 등의 사실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입대신청서 제출시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용소방대원 공개모집 공고문에도 제출서류 목록에 주민등록등본 1부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6년 중 신규 대원 모집시 입대신청서를 제출한 21명의 지원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받지 아니 하였고, 의용소방대법 및 서울시 조례 등 신규 대원 임용 관련 규정에서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청렴서약서 및 거래 은행 통장 사본을 입대신청서를 제출한 30명의 지원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용소방대원 신규 임용에 따른 입대지원자의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소홀히 함.

### ○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자 개인정보 처리 내역

연번	면접일자 (임용일자)	임용 인원	개인정보처리 현황			담당자	감독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주민등록 등의 사실증명 제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미제출자	청렴서약서 및 거래은행 통장 사본 제출자		
	총 계	34명	20명	21명	30명		
1	2016.03.22 (2016.03.25.)	8명  지적 사항	강오창, 권유정, 김송연 선미순, 윤혜원, 이윤영 이지호 (7명)	강오창, 권유정, 김상호 김송연, 선미순, 윤혜원 이윤영, 이지호 (8명)	강오창, 권유정, 김상호 김송연, 선미순, 윤혜원 이윤영, 이지호 (8명)	하충식	한희수
			○ 입대신청자 8명에게 불필요한 청렴서약서 및 통장 사본 제출하도록 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를 제출한 7명의 지원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 입대신청자 8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미제출				
2	2016.09.28. (2010.10.10.)	7명  지적 사항	박애라, 손평정, 정호영 유영순, 김미진, 전성찬 이창현 (7명)	박애라, 손평정, 정호영 유영순, 김미진, 전성찬 이창현 (7명)	박애라, 손평정, 정호영 유영순, 김미진, 전성찬 이창현 (7명)	하충식	한희수
			○ 입대신청자 7명에게 불필요한 청렴서약서 및 통장 사본 제출하도록 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를 제출한 7명의 지원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 입대신청자 8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미제출				
3	2016.12.27. (2017.01.09.)	6명	김혜은, 명정현, 백현아 심계남, 이수, 이영희	김혜은, 명정현, 백현아 심계남, 이수, 이영희	김혜은, 명정현 (2명)	하충식	한희수



연번	면접일자 (임용일자)	임용 인원	개인정보처리 현황			담당자	감독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주민등록 등의 사실증명 제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미제출자	청렴서약서 및 거래은행 통장 사본 제출자		
			(6명)	(6명)			
		지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대신청자 2명에게 불필요한 청렴서약서 및 통장 사본 제출하도록 함</li> <li>○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를 제출한 6명의 지원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li> <li>○ 입대신청자 6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미제출</li> </ul>				
4	2017.03.30. (2017.03.31.)	3명	신규대원 모집 공고문에 주민등록 등본제출 하도록 고지	동의서 제출함	김삼희, 방극환, 최인석 (3명)	백인철	김상철
			○ 입대신청자 3명에게 불필요한 청렴서약서 및 통장 사본 제출하도록 함				
5	2017.09.28. (2017.09.29.)	10명	신규대원 모집 공고문에 주민등록 등본제출 하도록 고지	동의서 제출함	김민주, 김외경, 배주만 오윤임, 유명자, 이정화 이주희, 전영구, 정현숙 정현순 (10명)	백인철	김상철
			○ 입대신청자 10명에게 불필요한 청렴서약서 및 통장 사본 제출하도록 함				

④ 재난관리과에서는 2017.12.22. 기준으로 의용소방대 정원 확보율이 80.5%로 정원 대비 -43명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 중에서도 남성대는 정원인 40명 대비 -14명이 부족하여 정원 확보율이 65%이고 여성대는 정원인 40명 대비 -27명으로 정원 확보율이 32.5%로 정원의 절반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대도 정원 20명 대비 -5명이 부족하여 정원 확보율이 75%인 상태로 의용소방대가 조직되어 있다. 또한 여성의용소방대장은 2016.03.04. 임기가 만료된 후 감사일 현재까지 공석 상태이고 여성부대장도 2017.04.14. 의원 면직된 후 현재까지 공석 상태로 있는 등 의용소방대 담당자는 의용소방대장(부대장) 또는 각 대별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신규 채용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충원을 하거나 대별 인사이동으로 남성대 및 여성대와 각 지역대(전문대 등)별 재직 인원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의용소방대 결원 등에 따른 조직 관리를 소홀히 함.

○ 의용소방대원 정·현원 현황 (2017.12.22. 기준)

구 분	계	남성대	여성대	전문대	반 포 지역대	방 배 지역대	양 재 지역대	서 초 지역대	잠 월 지역대	우 면 지역대
정 원	220	40	40	20	20	20	20	20	20	20
현 원	177	26	13	15	23	20	22	21	19	18
부족인원	-43	-14	-27	-5	+3	0	+2	+1	-1	-2
정원 확보 비율(%)	80.5	65	32.5	75	115	100	110	105	95	90

【 조치사항 】

- 재난관리과에서는 의용소방대원 신분증을 기준에 따라 반납조치하고, 신규 대원 채용시 개인정보 처리 및 의용소방대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관련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2017년	통 보			
제 목	<b>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 조치 소홀</b>				
<p><b>【내 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초소방서에서는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현장출동 및 활동을 위하여 펌프차·구급차·특수차 등 소방차량 4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재난 현장 출동시에는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2012.05.23.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항을 통보하고 있다.</li> <li>□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하여야 하고 이외의 장소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60조(과태료)의 기준에 따라 진로 양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등)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권한을 관할구역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였다.</li> <li>● 이에 따라 소방재난본부(재난대응과)에서는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관련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무협조(재난대응과-13176호/2012.06.12.) 문서를 통하여 서울시 교통지도과, 교통정책과, 교통운영과 및 25개 자치구·23개 소방관서에 법령 개정에 따른 원활한 업무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후에는 산하 소방관서에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철저(재난대응과-9117호/2013.04.09.), 진로양보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전산화에 따른 단속강화 알림(재난대응과-27098호/2013.10.24.), 불법 주정차 및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강화 지시(재난대응과-13869호</li> </ul>					

/2014.06.17.), 주정차 및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 철저(재난대응과-6328호/2015.03.20.), 주정차 및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 철저 재강조 알림(재난대응과-18094호/2015.08.11.) 등 여러 차례의 문서를 통하여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소방출동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계도장 발부 계획 시달(재난대응과-20709호/2013.08.12.)에 따라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대상에 대하여는 관할 구청에 차량 소유주를 확인하여 위반사실에 대한 계도장을 발부하도록 하였다.

- 재난관리과에서는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실시에 따라 관할 구청으로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2012년~2017년 07월 현재까지 단속을 실시한 실적을 보면 총 19건을 단속하여 관할구청에 통보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1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아니함.

또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차량에 대하여 차량의 소유주를 관할 구청에 확인하여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사실에 대한 계도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아니한 19건에 대하여 계도장을 발부한 실적도 없으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아니한 단속차량에 대한 계도장 발부 등의 사후조치를 위하여 관할구청으로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 후 부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결과를 통보 받은 실적도 확인되지 아니함.

- ◎ 그럼에도,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 담당자는 과태료 미부과 대상에 대한 결과를 관할구청 담당자로부터 통보 받을 수 있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아니한 사유가 제출된 사진 등 영상기록매체 자료가 기기의 성능부족 등에 따른 화질불량 등의 원인으로 부정확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자료의 내용에 있어서 객관성이 부족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출동부서에서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함.

- ◎ 또한, 소방서 성과평가 지표에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건수(연 4건 /반기 2건)가 감점 사항으로서 과태료 부과 여부와는 관계없이 평가기간 중 기준 건수 이상의 단속 실적만 있으면 감점이 되지 않는 평가 방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소방서 성과지표 상 감점을 방지하기 위한 실적 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하여 소속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확하고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거나, 재난현장 출동 황금시간 확보를 위한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 관련 법령의 취지 등에 반하여 성과평가 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도 본래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의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함.

○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구분	총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11월 현재	
	단속	과태료	단속	과태료	단속	과태료	단속	과태료	단속	과태료	단속	과태료	단속	과태료
단속건수	19	0	0	0	0	0	0	0	5	0	9	0	5	0
미부과 건수	19		0		0		0		5		9		5	
미부과 대상 계도장 발부 건수	0		0		0		0		0		0		0	

【 조치사항 】

- 재난관리과에서는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직무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재 정 상 조 치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비 고
서초소방서 <small>(현장대응단, 방배·서초·잠원·우면안전센터)</small>	2017년	주 의			
제 목	구급활동 이송거부 업무처리 소홀				

## 【내 용】

- 서초소방서에서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구급활동의 이송거절·거부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구조·구급활동),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 제21조(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 제12조(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에 따르면,
- 구급대원은 비응급환자의 경우 구급대상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고, 응급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거부하는 경우 이송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속 관서장에게 보고하고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 서초소방서 2017년 06월~12월간 구급 거절·거부내역을 확인한 바, 현장대응단 및 방배·서초·잠원·우면안전센터에서는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소속 관서장에게 보고 하지 않는 등 구급활동 기록관리를 소홀히 함.

○ 구조구급 이송 거절·거부 확인서 보고 누락현황

연번	재난번호	출동안전센터	출동년월일	출동시간	도착시간	귀소시간	구급사고 종별	구급반장	구급대원	운전요원	확인서 미작성
1	20171115509M02332	현장대응단	2017-08-10	18:44		20:25	이송거부	전여정	이영주	김호경	X
2	20171115509M02408	현장대응단	2017-08-15	12:27		15:20	이송거부	전여정	이영주	김호경	X
3	20171115102M01852	방배안전센터	2017-06-12	05:06	05:13	05:35	이송거부	원종현	류제웅	이진택	X
4	20171115102M02044	방배안전센터	2017-06-27	09:28		10:10	이송거부	유훈민	박현민	최민호	X
5	20171115102M03662	방배안전센터	2017-11-08	03:10	03:15	03:30	이송거절	이수민	류제웅	함상구	X
6	20171115104M02725	서초안전센터	2017-06-10	21:07	21:12	21:30	이송거부	윤상우		장민현	X
7	20171115104M02756	서초안전센터	2017-06-12	13:27	13:34	14:10	이송거부	윤상우		장민현	X
8	20171115104M03269	서초안전센터	2017-07-09	03:13	03:20	03:30	이송거절	이종민	조영훈	박기철	X
9	20171115104M03319	서초안전센터	2017-07-11	15:24		15:35	이송거절	이종민	조영훈	김효식	X

연번	재단번호	출동안전센터	출동년월일	출동시간	도착시간	귀소시간	구급사고 종별	구급반장	구급대원	운전요원	확인서 미작성
10	20171115104M03747	서초안전센터	2017-08-03	00:36	00:42	01:10	이송거부	김모세	홍미화	최창욱	X
11	20171115104M04127	서초안전센터	2017-08-23	08:52		10:32	이송거부	김도건	조한나	전영준	X
12	20171115104M04216	서초안전센터	2017-08-27	11:50	11:54	12:17	이송거부	홍미화	장민현	윤종철	X
13	20171115104M04497	서초안전센터	2017-09-14	05:45	05:54	06:15	이송거부	김모세	홍미화	최창욱	X
14	20171115104M05247	서초안전센터	2017-10-23	18:07	18:11	18:30	이송거부	김모세	홍미화	최창욱	X
15	20171115105M02662	잠원안전센터	2017-08-05	08:43		09:25	이송거부	임원재	윤초롱	이종원	X
16	20171115105M03312	잠원안전센터	2017-09-23	04:47	04:53	05:45	이송거부	이미옥		전성준	X
17	20171115105M03689	잠원안전센터	2017-10-22	13:23		13:57	이송거부	임원재	윤초롱	이종원	X
18	20171115105M03767	잠원안전센터	2017-10-28	17:44	17:51	19:07	이송거부	임원재	윤초롱	진명섭	X
19	20171115105M03992	잠원안전센터	2017-11-14	18:46	18:53	20:00	이송거부	임원재	윤초롱	이종원	X
20	20171115106M01050	우면안전센터	2017-06-24	16:32		17:00	이송거부	조민호	신경진	강태의	X
21	20171115106M01118	우면안전센터	2017-07-03	22:28	22:34	23:55	이송거부	조민호	신경진	김서중	X
22	20171115106M01465	우면안전센터	2017-08-28	08:29		08:50	이송거부	조민호	신경진	김서중	X
23	20171115106M01844	우면안전센터	2017-10-27	08:40	08:48	09:25	이송거부	조민호	신경진	김서중	X
24	20171115106M01934	우면안전센터	2017-11-12	22:44		23:15	이송거부	조민호	신경진	김서중	X

**【조치사항】**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기관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원)	
서초소방서 (예방과)	2017년	시정			
제목	<b>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교부대상 서류검토 소홀</b>				

**【내 용】**

- 서초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 완공 후 소방시설 완공 검사 신청을 한 대상에 대하여 소방관계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부적합함에도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였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시공), 같은 법 제14조(완공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에 의하면 소방시설공사업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한 후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소방서에서는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대상은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 및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소방관계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따라서 서초구 남부순환로333길 20 소재 산지빌딩 등 7개소에 대하여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 및 설계도서 검토결과 화재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은 도면 교체 등 보완요구 조치를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예방과에서는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 내용 중 옥내소화전설비 소화펌프 방수압력이 0.7MPa을 초과 함에도 감압조치 사항 미기재(2개소),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성능시험조사표 미첨부, 유도등 성능시험조사표 및 지하층 유도등 설계도면·소방시설 집계표의 유도등 수량 및 유형(대·중·소) 불일치,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의 스프링클러설비 소화배관 토출압이 1.2MPa 이상 임에도 적응성없는 배관 표기(KSD3562 동등이상의 배관재질 표기를 KSD3507 배관재질로 표기함-3개소),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의 비상방송 설비 확성기 2·3선식 구분을 위한 음량조정장치 유·무 미기재,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의 방염물품 해당사항 미기재 및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의 기타사항 중 방염물품, 방염처리내역 등 자료 미첨부, 소방공사 감리결과



보고서의 소화펌프 성능시험조사표 및 운전시험성적표가 미첨부 되었음에도 이상없음으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함.

○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부적정 내역

연 번	대상명	위 치	용 도	지상/지하층 (총면적)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일	지적내용	담당자	감독자
1	산지빌딩	남부순환로 333길 20	업무시설	5/2층 (1,461.37㎡)	2016.03.29.	-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의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성능시험 조사표 미첨부 - 유도등 성능시험조사표 및 지하층 유도등 설계도면·소방 시설 집계표의 유도등 수량 및 유형대·중·소 불일치	안성일	代 김원희
2	브렌드칸 타워	강남대로 527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16/6층 (6,985.25㎡)	2016.09.07	-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소화배관 토출압이 1.2MPa 이상 임에도 적응성 없는 배관 표기(KSD3502 동등이상의 배관 재질 표기를 KSD3507 배관 재질로 표기함)	안성일	강기홍
3	서초동피에프 브이	서초동 1688-1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14/5층 (9,657.41㎡)	2016.09.12.	-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의 비상방송설비 확장기 2·3선식 구분을 위한 음량조정장치 유·무 미검제	안성일	강기홍
4	반포1동 성당	주흥1길 6	종교시설	6/4층 (4,789.12㎡)	2017.01.13.	- 소방시설완공검사 증명서 상 방염물품 해당사항 미기재 -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의 기타사항 중 방염물품 방염 처리내역 등 자료 미첨부	안성일	강기홍
5	에스엔지 타워	서초대로77 길 61	근린생활시설	12/4층 (5,342.00㎡)	2017.05.22	- 옥내소화전설비 소화펌프 방수 압력이 0.7MPa를 초과하는 경우 감압조치를 한 후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의 펌프성능 시험 결과표에 감압조치 방구 위치 및 감압 방수압력을 기재 하여야 하나 펌프 토출압이 0.88MPa임에도 미기재함. -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의 스프링클러설비 소화배관 토출압이 1.2MPa 이상 임에도 적응성 없는 배관 표기(KSD3502 동등이상의 배관재질 표기를 KSD3507 배관재질로 표기함) - 지상층 10층 파난구 유도등을 부적응성 유도등으로 도면상 미검제	안성일	강기홍
6	인타이코피아 건물	서초중앙로1 2길 27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6/2층 (1,922.91㎡)	2017.06.13.	- 옥내소화전설비 소화펌프 방수 압력이 0.7MPa를 초과하는 경우 감압조치를 한 후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의 펌프성능 시험 결과표에 감압조치 방구 위치 및 감압 방수압력을 기재 하여야 하나 펌프 토출압이 0.75MPa임에도 미기재함. - 지하1층 주차장 파난구 유도등 설치위치 부적정(건물입구로 안내토록 설치됨) - 지상1층 엘리베이터역 후문 파난구 유도등 미설치 - 지상4층 옥내소화전환 배관 누수	안성일	강기홍

7	에이스관광 호텔	반포대로18 길 62	숙박시설	15/2층 (4,912.21㎡)	2017.09.19.	-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의 소화펌프 성능시험조사표 및 운전시험성적표 미첨부	이길수	김원희
---	-------------	----------------	------	----------------------	-------------	--	-----	-----

**【 조치사항 】**

- 감리결과보고서 및 설계도서 검토를 소홀히 한 대상에 대해서는 감리결과 보고서 및 설계(도서)를 변경하여 화재안전기준(고시)에 적합하게 작성 및 도면설계 되었는지 검토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재 정 상 조 치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비 고
서초소방서 (예방과)	2017년	시 정			
제 목	<b>건축허가 동의업무 서류검토 소홀</b>				

**【내 용】**

- 서초소방서에서는 건축물의 위치·구조·설비에 대한 소방안전 측면의 적합 여부를 건축설계 단계부터 검토하면서 설계된 소방시설이 소방관계법령에 부적합 함에도 도서검토 결과 이상없음으로 건축허가 동의 처리하였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의하면 인·허가기관에서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동의 요구시 해당 소방시설이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한 지 검토 하여 건축허가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따라서 서초구 서초동 1538-10 소재 S타워 등 6개소에 대하여 건축허가 동의 요구시 허가동의 대상 유무 및 설계도서 검토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도면교체 등 보완요구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예방과에서는 피난기구(완강기 및 유도등) 도면설계 부적정, 간이 스프링클러 소화펌프 계산서 미첨부, 자동화재탐지설비 적응성 없는 감지기도면설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약제량 계산서 및 소화배관도 등 건축협업의 서류 미첨부 되었음에도 도서검토 결과 이상없음으로 건축허가 동의 처리함.

○ 건축허가 등 동의업무 소홀대상

연 번	대상명	위 치	용도	지상/지하층 (총면적)	협의일 (통보일)	지적내용	담당자	감독자
1	S타워	서초동 1538-10	근린생활시설	8/2층 (1,777.30㎡)	2016.07.07.	- 지상3층-7층 층별 피난기구(완강기) 설치 위치를 동일 직선상에 도면 설계	안성일	강기홍
2	이희두 건물	방배동 795-22	근린생활시설	7/2층 (2,368.08㎡)	2016.10.28.	- 지하1층·2층 적응성 없는 유도등 도면설계	안성일	강기홍

3	양재2동 국공립 어린이집	논현로5길 15-3	노유자시설	3/0층 (465.56㎡)	2017.05.29.	- 자양층 적용성 없는 파난기구 도면 설계(완강기 설계됨)	안성일	강기홍
4	잠원동 국공립 어린이집	잠원동 34-8	노유자시설	4/0층 (485.02㎡)	2017.05.18.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소화펌프 계산서 미첨부 - 자양층·2층·4층 보일러실 자양층 주방 자동화계탐지설비 적용성 없는 감지기 도면설계	안성일	강기홍
5	서초 스페이스 다운	효령로 425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15/3층 (3,421.47㎡)	2017.10.13.	- 전층 적용성 없는 유도등 도면설계 - 건축물 단면도, 주단면 상세도, 창호도, 소방시설 사설별 계산서 미첨부 -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증 및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미첨부	이길수	김원희
6	승원빌딩	서초대로73 길 26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15/5층 (24,964.72㎡)	2017.10.23.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소화약제 계산서 및 소화배관도면 설계프로그램 적용 유·무 포함) 미첨부	이길수	김원희

### 【 조치사항 】

- 도서 검토를 소홀히 한 대상에 대해서는 설계도면 변경하여 화재안전기준 (고시)에 적합하게 설계 되었는지 검토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감사결과 처분요구

18				재정상조치		비고
기관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서초소방서 <small>(예방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small>	2017년	시정				
제목	<b>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검토 소홀</b>					

## 【내용】

- 서초소방서에서는 건축허가등의 동의시 공사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 전 설치하여야 하는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을 검토하여 소방안전 측면의 적합여부를 건축설계 단계부터 검토하여야 함에도 건축허가 동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특정 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에 의하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적합한 지 검토하여야 한다.
- 따라서 서초구 효령로29길 29 소재 김옥현 건물 등 7개소에 대하여 특정 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되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이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에 누락된 경우 설치계획서 수정 등 보완조치를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예방과에서는 임시소방시설이 설치계획서에 누락 되었음에도 도서 검토결과 이상없음으로 허가 동의함.

### ○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누락대상

연번	대상명	위치	지상/지하층 (총면적)	누락 임시소방시설	허가(비협의) 동의(협의)일	담당자	감독자
1	김옥현 건물	효령로29길 29	6/1층 (2,584.94㎡)	간이소화장치	2016-12-08	안성일	강기홍
2	서초4동 복합주민센터	서운로26길 3	7/3층 (5,734.91㎡)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2016-12-13	안성일	강기홍
3	서초3동 구립경로당 건물	반포대로1길 53-3	4/1층 (684.55㎡)	간이피난유도선	2016-12-19	안성일	강기홍
4	이명륜 건물	서초동 1302-40	7/2층 (1,983.69㎡)	소화기	2017-02-20	안성일	강기홍

5	방배4동 국공립어린이집	방배동 873-4	3/0층 (403.49㎡)	소화기	2017-04-11	안성일	강기홍
6	백산산업 건물	강남대로43길 6	6/2층 (1,740.76㎡)	비상경보장치	2017-04-21	안성일	강기홍
7	잠원동 국공립어린이집	강남대로95길 75	4/1층 (497.20㎡)	비상경보장치	2017-05-18	안성일	강기홍

**【 조치사항 】**

- 임시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설치계획서를 변경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감사결과 처분요구

19			재 정 상 조 치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비 고
서초소방서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2017년	시 정			
<b>제 목</b>	<b>화재취약대상 화재예방 순찰 소홀</b>				

## 【내 용】

- 서초소방서에서는 전통시장, 건축공사장 등 화재취약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소방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였다.
- 2017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 1. 화재예방·경계활동 강화, 2.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2017년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중점 소방안전관리 대책(알림)(서울시 예방과-3799호/2017.02.13.), 2017.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중점 소방안전관리대책 보고(알림)(서초 예방과-3984호/2017.02.24.)에 의하면, 안전센터(현장대응단)는 펌프차 등을 이용하여 전통시장에 대하여 1일 1회 이상 철시이후 야간 화재예방 순찰을 실시하고, 연면적 1만㎡ 이상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화재예방 순찰을 실시 하여야 한다.
- 따라서 안전센터(현장대응단)는 서초소방서 관내 건축공사장 26개소 및 전통시장 6개소에 대하여 1일 1회 이상 펌프차량 등을 이용한 차량 화재 예방 순찰을 실시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2017년 08월~09월 중 건축공사장 및 전통시장 화재예방 순찰을 현장대응단 1회, 양재안전센터 1회, 서초안전센터 2회, 우면안전센터 1회, 방배안전센터 3회, 잠원안전센터 2회, 총 10회 펌프차량 등을 이용한 화재 예방 순찰을 결락함.

### ○ 소방차량 예방순찰 미실시 대상

연번	소방안전 대책	주요내용	추진방법	담당자		미실시 등 지적사항
1	전통시장 소방안전대책	야간 화재예방순찰	1일 1회 이상 (철시이후)	현장대응단	송윤석	1회(2017.08.19.)
				양재안전센터	임영섭	1회(2017.08.12.)

				서초안전센터	허재석	2회(2017.08.18./09.16.)
				우면안전센터	문우근	1회(2017.09.23.)
2	건축공사장 소방안전대책	1만㎡ 이상 기동순찰	1일 1회 이상 (특별경계근무시 1일 2회 이상)	방배안전센터	권영철	3회(2017.08.10./08.11./08.31.)
				잠원안전센터	신재영	1회(2017.08.04.)
					조상철	1회(2017.08.05.)

**【 조치사항 】**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감사결과 처분요구

20					
기관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원)	
서초소방서 (예방과)	2017년	시정			
제목	<b>특정소방대상물 예방소방행정 자료조사 소홀</b>				

**[내용]**

- 서초소방서에서는 매년 소방대상물에 신규대상 및 철거·폐업·중복 등으로 제외되는 변경대상 전산입력 및 소방안전관리 대상 등급분류를 소홀히 하였다.
- 예방소방 업무처리 규정 제4조(소방대상물의 조사), 2017년도 예방소방 행정통계 작성 결과 알림(서울시 예방과-4464호/2017.02.20.) 및 80. 2017년도 예방소방행정통계 자료 제출(서초 예방과-3111호/2017.02.14.)에 의하면, 관내 특정 소방대상물을 전수조사 실시하여 철거·중복 및 다중이용업소 폐업 등으로 제외되거나 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대상별 정보를 119행정정보 시스템에 수정 입력하고 소방안전관리 대상은 등급별 재분류를 하여 정확한 예방소방행정 자료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따라서 예방소방행정통계 자료조사시 소방대상물을 전수 조사하여 철거·중복 등으로 제외되는 대상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야 하며, 소방안전관리 대상은 등급별 재분류를 정확히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예방과에서는 2017년 예방소방행정 자료조사를 실시하면서 특정 소방대상물 9,068개소 중 102개 대상을 중복하여 전산관리, 21개 대상은 건물 대표동수를 미부여하여 전산관리하고 있으며, 소방안전관리대상 4,220개소 중 18개 대상에 대하여 일반 2급대상을 일반 1급대상으로 전산관리(3개소), 공공 2급대상을 일반 1급대상으로 전산관리, 일반 2급대상을 일반대상으로 관리, 일반 3급대상을 일반 2급대상으로 관리(9개소), 일반 3급대상을 일반 2급대상으로 관리(4개소) 하는 등 소방안전관리대상 등급 분류를 소홀히 함.

○ 중복 전산관리 대상

연번	대상물명	주 소	층 수 (지상/지하)	총면적(㎡)	담당자
1	소림사 건물	샘마을2길 26	2/1	497.55	남궁윤
2	내곡동 1-145	샘마을2길 28	1/1	146.48	남궁윤
3	내곡동165-1건물	능안말3길 10	1/1	133.31	남궁윤
4	내곡동165-1건물	능안말3길 12	2/1	819.18	남궁윤
5	호룡빌딩	사평대로 58	5/1	611.25	남궁윤
6	호룡빌딩	사평대로 58	5/1	611.25	남궁윤
7	M.W STAY	사평대로55길 65-3	5/0	468.35	남궁윤
8	반포동734-6건물	사평대로55길 65-3	5/0	468.35	남궁윤
9	요셉 건물	주흥1길 20	3/0	193.92	남궁윤
10	대한건축산업건물	주흥1길 20	6/0	524.83	남궁윤
11	영한빌딩	주흥1길 6	4/1	2,364.00	남궁윤
12	반포1동 성당	주흥1길 6	6/4	.00	남궁윤
13	영한빌딩(반포1동 성당)	주흥길 9	6/4	4,789.12	남궁윤
14	UPPER HOUSE 건물	사평대로12길 45	6/2	7,199.21	남궁윤
15	UPPER HOUSE	사평대로12길 45	6/2	7,199.21	남궁윤
16	김수건물	동광로 11	5/1	853.19	남궁윤
17	대정빌딩	동광로 11	4/1	676.00	남궁윤
18	사당자동차학원	과천대로 904-6	2/1	462.90	남궁윤
19	청진자동차공업사	과천대로 904-6	2/1	1,551.71	남궁윤
20	방배동 437-13	방배천로18길 16	3/1	316.40	남궁윤
21	방배동437-13건물	방배천로18길 16	3/1	435.28	남궁윤
22	방배1동제2경로당	방배천로16길 5	2/1	274.14	남궁윤
23	방배데이케어센터	방배천로16길 5	2/1	274.14	남궁윤
24	자이빌	방배중앙로13길 48-3	5/0	724.78	남궁윤
25	자이빌(젠하우스)	방배중앙로13길 48-3	5/0	724.78	남궁윤
26	(주)컴시너지 이칭통건물	방배천로24길 29	6/0	429.23	남궁윤
27	컴시너지	방배천로24길 29	2/1	211.23	남궁윤
28	서초동1308-23건물	서초대로75길 37	1/1	988.41	남궁윤
29	칼맞은삼겹살	서초대로75길 37	1/1	214.83	남궁윤
30	서초1동경로당	효령로68길 49-3	2/1	198.00	남궁윤
31	서초1동노인정	효령로68길 49-3	2/1	198.00	남궁윤
32	서초동 1444-16	효령로60길 23-10	6/1	999.45	남궁윤
33	푸른기술빌딩(구.서초백년빌딩)	효령로60길 23-10	6/1	999.45	남궁윤
34	서초장로교회건물	반포대로21길 40	3/1	830.04	남궁윤
35	서초동 1511-11 건물	반포대로21길 40	3/1	988.81	남궁윤
36	에이스관광호텔	반포대로18길 60	15/2	4,912.21	남궁윤
37	투투정비(구.디알드림모터스)	반포대로18길 64	2/0	356.35	남궁윤
38	팜스빌	서리풀6길 14	2/1	658.70	남궁윤
39	팜스빌	서리풀6길 14	2/1	658.70	남궁윤
40	서초동 1626-17	사임당로10길 15	2/1	651.40	남궁윤
41	인터아이코리아 건물	사임당로10길 15	2/1	1,922.91	남궁윤
42	소유 건물	서초대로55길 9	2/1	184.33	남궁윤
43	이명숙 건물	서초대로55길 9	5/1	581.70	남궁윤
44	양재동124건물	강남대로23길 25	5/1	738.95	남궁윤
45	한수빌딩	강남대로23길 25	4/1	639.73	남궁윤
46	신보빌딩(평창할마이집)	강남대로 210	3/1	481.22	남궁윤
47	양재동 13-11 건물	강남대로 210	13/3	3,167.52	남궁윤
48	양재동17-39건물	바우피로39길 49	5/1	510.52	남궁윤

49	양재에너지(주) 우보전기	바우피로39길 49	3/1	203.00	남궁윤
50	영신빌딩(로얄크리닝)	논현로31길 46	3/1	749.04	남궁윤
51	농협하나로마트	청계산로 10	3/1	71,591.57	남궁윤
52	원지동 230	청계산로 10	1/0	63.00	남궁윤
53	AT센터	강남대로 27	15/3	59,103.85	남궁윤
54	aT센터	강남대로 27	3/1	26,166.00	남궁윤
55	양통령양곡창전문점	동산로19길 54	2/0	206.91	남궁윤
56	삼희인스트루먼트 건물	동산로19길 54	5/1	736.07	남궁윤
57	시안 건물	논현로31길 65	6/0	1,227.72	남궁윤
58	세원골프연습장(세원골프장)	논현로31길 75	3/1	1,350.95	남궁윤
59	제일빌딩	강남대로 511	5/1	2,176.68	남궁윤
60	아디다스건물	강남대로 511	5/1	2,176.68	남궁윤
61	제일빌딩	강남대로 521-3	3/1	833.22	남궁윤
62	제일빌딩	강남대로 521-3	3/1	833.00	남궁윤
63	해인빌딩(세븐일레븐)	강남대로27길 7-9	8/3	4,264.79	남궁윤
64	우곡빌딩(배상면주차)	강남대로27길 7-9	6/3	4,264.00	남궁윤
65	잠원동16-2건물	나루터로 58	2/1	300.47	남궁윤
66	잠원동18-2건물	나루터로 58	2/1	300.47	남궁윤
67	전당앞주유소	남부순환로 2391	2/1	982.22	남궁윤
68	전당앞주유소	남부순환로 2391	2/1	982.22	남궁윤
69	서울양재동우체국	남부순환로356길 5	5/1	1,549.36	남궁윤
70	서인치과(부양빌딩)	남부순환로356길 5	4/1	596.28	남궁윤
71	양재동 370	동산로6길 19	7/1	3,879.75	남궁윤
72	현대아파트	동산로6길 19	7/1	3,879.80	남궁윤
73	산정빌딩	마방로6길 8-11	6/1	1,585.55	남궁윤
74	산정빌딩	마방로6길 8-11	6/1	1,585.55	남궁윤
75	한중빌딩	반포대로 35	4/1	953.63	남궁윤
76	서초동 1460-9	반포대로 35	4/1	953.63	남궁윤
77	엘림하우스(최성식 건물)	반포대로21길 49	5/1	998.54	남궁윤
78	최순명건물(웰컴02독서실)	반포대로21길 49	4/1	875.28	남궁윤
79	서초동 1554-14	반포대로30길 29	4/1	745.62	남궁윤
80	서초동1554-14건물	반포대로30길 29	10/2	1,874.07	남궁윤
81	(주)신성엔지	언남16길 32	5/0	516.60	남궁윤
82	(주)신성엔지	언남16길 34	5/0	513.89	남궁윤
83	기탄빌딩	효령로 40	5/1	1,259.39	남궁윤
84	기탄빌딩	효령로 42	5/3	2,838.78	남궁윤
85	대항병원	남부순환로 2151	9/5	3,966.66	남궁윤
86	대항병원	남부순환로 2151	7/5	3,624.51	남궁윤
87	반원상가	서래로8길 18	2/1	3,123.00	남궁윤
88	반원상가	신반포로23길 30	2/2	7,973.97	남궁윤
89	산정빌딩	마방로6길 8-11	6/1	1,585.55	남궁윤
90	산정빌딩	마방로6길 8-11	6/1	1,585.55	남궁윤
91	새빛맹인교회	방배중앙로 99	5/1	669.08	남궁윤
92	새빛맹인선교회	방배중앙로 97-1	5/1	758.28	남궁윤
93	신호빌 5차	방배천로2안길 89	5/0	425.36	남궁윤
94	신호빌 5차	방배천로2안길 87	5/0	415.35	남궁윤
95	아름채	바우피로39길 69	5/0	359.31	남궁윤
96	아름채	바우피로39길 68	5/0	466.73	남궁윤
97	원지동 230	청계산로 10	1/0	63.00	남궁윤
98	원지동 230	새원길 41-5	1/0	63.00	남궁윤
99	인선환의원	방배중앙로21길 60-2	3/1	389.00	남궁윤

100	인선한의원	방배중앙로21길 60-6	2/1	194.94	남궁윤
101	제일빌딩	강남대로 521-3	3/1	833.22	남궁윤
102	제일빌딩	강남대로 521-3	3/1	833.00	남궁윤

○ 건물 대표동수 미부여 대상

연번	대상물명	주소	층수 (지상/지하)	총면적(㎡)	담당자
1	반포동734-6건물	사평대로55길 65-3	미입력	468.35	남궁윤
2	방배동437-13건물	방배천로18길 16	미입력	435.28	남궁윤
3	방배동914-24건물	효령로27길 19	미입력	499.73	남궁윤
4	새로나빌딩	주흥길 6	미입력	3,585.52	남궁윤
5	생보부동산신탁 건물	효령로79길 1	미입력	6,076.31	남궁윤
6	서초동 1511-11 건물	반포대로21길 40	미입력	988.81	남궁윤
7	서초동 1628-9 건물	사임당로 80-6	미입력	692.42	남궁윤
8	서초동 블레스아파트	효령로47길 9	미입력	1,383.47	남궁윤
9	서초동1308-23건물	서초대로75길 37	미입력	988.41	남궁윤
10	서초동1495-3건물	명달로17길 28	미입력	789.99	남궁윤
11	서초동1665-4건물	서초대로54길 48-6	미입력	614.97	남궁윤
12	서초모텔하우스	서초대로 247	미입력	1,030.36	남궁윤
13	서초모텔하우스	남부순환로 2640	미입력	1,117.10	남궁윤
14	양재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언남길 8	미입력	3,469.08	남궁윤
15	양재동 246-6 건물	언남3길 6	미입력	605.12	남궁윤
16	에스엔지타워	서초대로73길 54	미입력	5,342.00	남궁윤
17	인터아이코리아 건물	사임당로10길 15	미입력	1,922.91	남궁윤
18	잠원하우징	신반포로23길 74	미입력	1,415.47	남궁윤
19	장희숙 건물	효령로47길 27	미입력	829.01	남궁윤
20	코원 건물	효령로 355	미입력	2,959.45	남궁윤
21	호주건설(모델하우스)	서초대로 372	미입력	1,510.40	남궁윤

○ 소방안전관리 대상별 등급분류 소홀 대상

연번	대상명	주소	층수 (지상/지하)	총면적 (㎡)	지적사항	담당자
1	서초잠요양병원	양재대로 54	10/2	11,380.23	일반 2급대상을 일반 1급대상으로 관리	김지용
2	아이티센시스템즈 (구.제우피스빌딩)	반포대로 13	6/2	4,475.98	일반 2급대상을 일반 1급대상으로 관리	김지용
3	강남메트로빌딩	강남대로 299	10/1	12,023.88	일반 2급대상을 일반 1급대상으로 관리	김지용
4	잠원초등학교	신반포로16길 15-25	4/0	9,173.98	공공 2급대상을 일반 1급대상으로 관리	김지용
5	UPPER HOUSE 2	사평대로12길 55	6/2	5,215.92	일반 2급대상을 일반대상으로 관리	김지용
6	디자인그룹희오	방배로37길 48-1	5/2	759.67	일반 3급대상을 일반 2급대상으로 관리	김지용
7	다솜A(이영숙건물)	방배중앙로27길 37	7/1	1,070.90	일반 3급대상을 일반 2급대상으로 관리	김지용
8	내곡동165-1건물	능안말3길 12	2/1	819.18	일반 3급대상을 일반 2급대상으로 관리	김지용
9	양재동124건물	강남대로23길 25	5/1	738.95	일반 3급대상을 일반 2급대상으로 관리	김지용
10	양재동8-14건물	강남대로34길 57	6/0	903.88	일반 3급대상을 일반 2급대상으로 관리	김지용
11	위더스하임2차	사임당로14길 38	6/0	1,284.60	일반 3급대상을	김지용

					일반 2급대상으로 관리	
12	아카데미하우스	서래로5길 86	6/1	969.14	일반 3급대상을 일반 2급대상으로 관리	김지웅
13	송지빌딩	바우피로 211	7/2	1,162.44	일반 3급대상을 일반 2급대상으로 관리	김지웅
14	응지타운	사임당로19길 28-7	2/2	1,479.79	일반 3급대상을 일반 2급대상으로 관리	김지웅
15	방배동 805-12 건물	서초대로33길 93	6/1	698.47	일반대상을 일반 2급대상으로 관리	김지웅
16	사랑의집	탐성말길 26	2/0	238.17	일반대상을 일반 2급대상으로 관리	김지웅
17	양재동267-3건물	마방로10길 18-10	5/1	1,254.96	일반대상을 일반 2급대상으로 관리	김지웅
18	JJ VILLAGE	서초대로25길 106	5/0	551.92	일반대상을 일반 2급대상으로 관리	김지웅

**【 조치사항 】**

- 예방소방행정자료 중복대상은 수정 입력하고 소방안전관리 등급 부적정 대상은 재분류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감사결과 처분요구

21			재정상조치		비고
기관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서초소방서 (예방과)	2017년	시정			
제목	다중이용업소 119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소홀				

## 【내용】

- 서초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대상에 대하여 119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 2016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안전지원행정편 11. 119행정정보시스템운영에 의하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다중이용업소)에 규정된 다중이용업소는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일반사항, 관할내 위치도, 건물내 위치도, 내부 평면도 등을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 예방과에서는 2016년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신규 발급대상 풍천가서초 등 48개소는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일반현황, 소방시설 내역은 입력되었으나, 관할내 위치도, 건물내 위치도, 내부 평면도 등은 입력되지 아니한 상태로 관리됨.

### ○ 119행정정보시스템 미입력 현황

연번	담당자	업소명	위치		영업주	발급일자	내용 (미입력)
1	이시영 최재구	풍천가 서초	강남대로4길	4	이경주	2016.01.06.	위치도 평면도
2	김상하 김상용	군산오징어	신반포로	194	최하나	2016.01.07.	위치도 평면도
3	이강산 최재구	샤보텐 스토어	동작대로	62	한경철	2016.01.12.	위치도 평면도
4	변건수 황태연	원당감자탕	방배천로4길	9	이학승	2016.01.27.	위치도
5	김상하 김상용	카페포즈	강남대로	259	이재훈	2016.01.28.	평면도
6	변건수 황태연	빌리엔젤 강남역점	강남대로65길	1	정현숙	2016.02.12.	위치도 평면도
7	김상하 김상용	살바토레 쿠오모	신반포로	176	문민용	2016.02.17.	위치도 평면도
8	이시영 최재구	밀화	신반포로	176	정재원	2016.02.17.	위치도 평면도
9	양용규 유나	차이나	양재대로11길	36	유제삼	2016.02.17.	위치도 평면도
10	이시영 최재구	콩부인	신반포로	176	서지희	2016.02.17.	위치도 평면도
11	양용규 유나	마나보다만화카페	신반포로	334	박완식	2016.02.29.	위치도 평면도
12	김상하 김상용	이여곰탕	서초대로46길	19-5	박현주	2016.02.02.	위치도 평면도
13	양용규 유나	고터랑	신반포로	194	김재범, 강성원	2016.02.29.	위치도

14	변건수 황태연	더스폰	강남대로79길	53	김미순	2016.02.26.	위치도 평면도
15	양용규 유나	(주)핫시즈너 동대문 엽기떡볶이 강남점	강남대로61길	13	금주영	2016.02.24.	관할위치도
16	김상하 김상용	한우프라자	청계산로	197	서병국	2016.02.24.	관할위치도
17	양용규 유나	(주)더알코리아	서래로6길	7	송성문	2016.02.01.	위치도 평면도
18	김상하 김상용	유림	강남대로	213	권순연	2016.03.11.	위치도 평면도
19	변건수 황태연	(주)스타벅스커피 코리아청계산입구점	청계산로	203	이석구	2016.03.15.	관할위치도
20	김상하 김상용	뽕다방	신반포로	188	이승진	2016.04.04.	위치도 평면도
21	양용규 유나	명품꼬꼬지	청룡마을4길	11-1	김정우	2016-04-01	관할위치도
22	양용규 유나	서래마을조개창고	방배로	147	김수영	2016.04.07.	위치도 평면도
23	이시영 최재구	101번지남산돈까스 (센트럴시티점)	신반포로	176	조윤희	2016.04.07.	평면도
24	변건수, 황태연	순대실록 (센트럴시티점)	신반포로	176	육경희	2016.04.06.	평면도
25	변건수 황태연	포베이 (삼성서초사옥점)	서초대로74길	11	한세진	2016.04.15.	위치도 평면도
26	양용규 유나	슈퍼스타 코인노래연습장	서초대로77길	37	박원영	2016.04.01.	위치도 평면도
27	김상하 김상용	W 노래바	서초대로	309	박종경	2016.03.21.	위치도 평면도
28	변건수 황태연	소공동뚝배기교대점	서초대로54길	32	최용식	2016.04.19.	위치도 평면도
29	양용규 유나	영터리생고기 방배역점	효령로31길	10	박철	2016.05.11.	위치도 평면도
30	이시영 최재구	다미한정식	서초대로51길	16	최미경	2016.05.16.	관할위치도
31	변건수 황태연	진짜(ZINZZA)	방배천로4길	9	신연우	2016.04.18.	관할위치도
32	양용규 유나	삼백식당	효령로55길	27	김수연	2016.05.12.	관할위치도
33	김상하 김상용	청계산기와집양대창 센터	청룡마을길	5	강정욱	2016.05.16.	평면도
34	이시영 최재구	러블리	강남대로53길	7	김정훈	2016.05.02.	평면도
35	양용규 유나	미카쿠	효령로	261	김진섭	2016.05.24.	관할위치도
36	이시영 최재구	Bar Noy84	사평대로26길	22	주성호	2016.03.28.	위치도 평면도
37	양용규 유나	양문	반포대로28길	70	김태원	2016.05.31.	관할위치도
38	이시영 최재구	캐슬	반포대로28길	65-4	조성민	2016.05.25.	평면도 상이
39	변건수 황태연	(주)이젠아카데미	서초대로77길	54	고태곤	2016.05.30.	위치도 평면도
40	양용규 유나	하이디라오 강남점	서초대로77길	54	양리취엔	2016.04.25.	관할위치도
41	김상하 김상용	락휴노래타운	서초대로77길	25	안선태	2016.05.31.	관할위치도
42	변건수 황태연	(주)뷰티르사강남지점	서초대로77길	55	김채호	2016.06.22.	관할위치도
43	양용규 유나	하오차이	효령로	260	장소원	2016.06.16.	위치도 평면도
44	김상하 김상용	갤럭시 원룸텔	강남대로91길	16	장현경	2016.06.24.	위치도 평면도
45	이시영 최재구	라이언카페	강남대로	429	조항수	2016.06.27.	위치도 평면도
46	변건수 황태연	어촌횃집	서초대로26길	24	조이묵	2016-06-29	관할위치도
47	양용규 유나	육백집	신반포로	177	백청수	2016.07.04	관할위치도
48	김상하 김상용	레스토랑 라모라	동광로39길	50	안인호	2016.06.28	관할위치도

**【 조치사항 】**

- 119행정정보시스템에 미입력한 다중이용업소는 건물 내 위치도 내부 평면도 입력 관리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감사결과 처분요구

22			재정상조치		
기관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비고
서초소방서 (예방과)	2017년	주의			
제목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발급관련 서류검토 소홀				

## [내용]

- 서초소방서에서는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를 접수받아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완비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준 등) ③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①항에 의하면 소방시설 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 평면도,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방염서류 등 첨부서류를 검토하여야 한다.
- 예방과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를 검토하면서 삼진어묵강남뉴코아점 등 23개소는 사용층 전체 평면도 미첨부, 유도등 규격 누락 등 부적합 함에도 보완요구 없이 처리함.
-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서 서류검토 소홀 현황

연번	담당자	업소명	소재지		영업주	발급일자	내용 (검토소홀)
1	양용규, 유나	삼진어묵 강남뉴코아점	잠원로	51	박용준	2016.02.02.	유도등 규격
2	김상하, 김상용	아오키일식	신반포로	176	김선희외1명	2016.02.18.	전체평면도
3	김상하, 김상용	폴라주	신반포로	176	이형준	2016.02.22.	유도등 규격
4	양용규, 유나	평양면옥	신반포로	176	서금순외1인	2016.02.18.	유도등 규격
5	김상하, 김상용	살바토레 쿠오모	신반포로	176	문민용	2016.02.17.	유도등 규격
6	김상하, 김상용	어부	서초중앙로	58	최명이	2016.02.24.	전체평면도
7	이시영, 최재규	밀크	강남대로	403	강대중	2016.02.23.	유도등 규격
8	변건수, 황태연	(주)스타벅스커피 코리아청계산입구점	청계산로	203	이석구	2016.03.15.	전체평면도
9	김상하, 김상용	백다방	신반포로	188	이승진	2016.04.04.	전체평면도

10	이시영, 최재규	(주)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강남2호점	서초대로77길	27	이석구	2016.03.24.	전체평면도
11	변건수, 황태연	한솔요리커피 제과제빵학원	강남대로	405	이서욱	2016.01.28.	유도등 규격
12	양용규, 유나	슈퍼스타 코인노래연습장	서초대로77길	37	박원영	2016.04.01.	전체평면도
13	양용규, 유나	엔터리생고기 방배역점	효령로31길	10	박철	2016.05.11.	전체평면도
14	변건수, 황태연	(주)이젠아카데미	서초대로77길	54	고태곤	2016.05.30.	유도등 규격
15	양용규, 유나	하이디라오 강남점	서초대로77길	54	앙리취엔	2016.04.25.	유도등 규격
16	양용규, 유나	육백집	신반포로	177	백청수	2016.07.04.	전체평면도
17	변건수, 황태연	이자까야나무 삼성타운점	서초대로78길	26	최용일양유나	2016.10.27.	유도등 규격
18	양용규, 유나	메가스터디교육(주)	사임당로	178	손성은	2016.11.02.	유도등 규격
19	변건수, 황태연	틀루랄라동전 노래연습장	논현로17길	19	전주배	2016.10.24	전체평면도
20	양용규, 유나	편비어킹	신반포로	194	김용희	2016.11.08	전체평면도
21	양용규, 유나	서플	서초대로77길	58	박태훈	2016.11.22	유도등 규격
22	변건수, 황태연	디엠	서초대로77길	58	채철 박다희외1인	2016.11.09	유도등 규격
23	양용규, 유나	버거킹(양재점)	강남대로	221	문영주	2016.12.05	전체평면도

**【 조치사항 】**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감사결과 처분요구

23					
기관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원)	
서초소방서 (예방과)	2017년	시정			
제목	<b>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부적정</b>				

**[내용]**

- 서초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소방시설이 적합할 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시설등의 설치 또는 완공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현장을 확인하여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예방과에서는 안전시설등 설치기준에 부적합 함에도 다음과 같이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함.
  - ① 서초구 서초중앙로 53 소재 신세계유흥주점(10/2층, 4,246.32㎡ 중 지하 1층, 433.62㎡)은 주출입구 피난구 유도등 및 주방내 감지기가 탈락되어 안전시설등 설치기준에 부적합 함에도 2015.12.31. 완비증명서 재발급됨.
  - ② 서초구 서초대로77길 58 소재 큐브유흥주점(11/5층, 3,462.46㎡ 중 지상3,4층, 395㎡)은 피난구 유도등(주출입구 및 비상구)이 소형 유도등으로 설치 되었음에도 2016.05.24. 완비증명서 재발급되었으며. 이후 영업장 구획된 실(12개)에 피난안내도 탈락된 상태로 관리됨.
  - ③ 서초구 신반포로 334 소재 마나보다만화카페(4/1층, 1,196.51㎡ 중 지하1층, 296.02㎡)는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토출배관 개폐밸브 탬퍼 스위치 미설치 되었음에도 2016.03.02. 완비증명서 발급되었으며. 이후 수신기 부저스위치 오동작 상태로 관리함.

**【 조치사항 】**

- 안전시설 등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은 관계법규에 따라 시정조치 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감사결과 처분요구

24					
기관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원)	
서초소방서 (예방과)	2017년	시정			
제목	<b>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업무처리 소홀</b>				

**[내용]**

- 서초소방서에서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 및 자체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시정보완 조치명령을 하고 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에 의하면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명령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예방과에서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업무를 처리 하면서
  - ① 서초구 반포대로14길 51 소재 나인스호텔(10/3층, 4,031.55㎡)은 지상 2층~10층 피난구유도등 적응성 불량(소형 설치), 508호 간이완강기 미비치, 1002호 휴대용비상조명등 탈락, 지상9층 완강기 위치 부적합 설치(난간높이 150cm)되는 등 안전시설등 설치기준에 부적합 함에도 2017.04.24. 소방특별조사 현장확인시 지적 및 조치하지 아니함.
  - ② 서초구 반포대로18길 40 소재 E호텔(9/1층, 4,739.65㎡)은 지하1층 펌프실 동력제어반 표시등 불량, 지상9층 완강기 미비치, 905호실 휴대용 비상조명등 탈락, 지상1층 지붕 설치(피난기구 사용 장애) 되었음에도 2017.04.24.

소방특별조사 현장확인시 지적 및 조치하지 않음.

【 조치사항 】

- 안전시설등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은 관계법규에 따라 시정조치 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감사결과 처분요구

25					
기관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원)	
서초소방서 (예방과)	2017년	시정			
<b>제목</b>	<b>위험물시설 자율 안전관리 지도 업무소홀</b>				

**[내용]**

- 서초소방서에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한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소방검사 및 설치허가(완공), 변경허가(완공) 등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위험물 규제업무 처리규정 제13조(소방검사 결과조치) 및 2017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 10. 위험물시설 자율 안전관리 지도에 의하면 위험물 제조소 등 소방검사결과 위법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형사입건, 과태료부과 처분, 행정명령(경고, 시정명령, 사용정지, 허가 취소 등을 말한다.) 등의 조치 중 해당성이 있는 사항을 모두 병행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물규제 업무 처리규정 제8조(완공검사필증 및 제조소등 관리대장 등의 기록 등) 설치 허가 완공시 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위험물 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에 기록하여 교부하고, 변경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완공검사필증의 비고란에 종전의 허가 및 완공검사 이력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119행정 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 예방과에서는 아래와 같이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소방검사 결과조치에 따른 업무를 부적합하게 처리하였으며, 허가수량 등 세부내용을 119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음.
  - ① 서초구 효령로 174 소재 KT서초지사(지하탱크저장소)는 통기관 인화 방지망이 탈락되어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기준에 부적합 함에도 2017.04.06. 소방검사시 지적 및 조치하지 않음.
  - ② 서초구 효령로 29 소재 방배동주유소는 게시판에 위험물안전관리자 변경

사항 미기재 및 소화기 3대(대형 1, 소형 2)가 압력계이지 탈락 등 노후되어 위험물제조소등 설치기준에 부적합 함에도 2017.07.07. 소방검사시 지적 및 조치하지 않음.

③ 서초구 과천대로 838 소재 남태령주유소 등 5개소를 완공하면서 제조소 등 기본대장인 119행정정보시스템의 제조소등 관리대장 탱크유별 현황에 유별, 품명, 허가량, 탱크종류 등을 자세하게 입력관리 하여야 함에도 기본정보, 위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관한 구분란에 허가품명과 허가량을 간략하게 입력 하는 등 소홀하게 관리함.

○ 위험물제조소등 관리대장 입력 소홀 현황

연번	대 상	주소	대표자	완공일	허가내용	비고
1	방배주유소	효령로 29	김영권	20116.02.05	휘발유 30,000 X 3 경 유 30,000 X 1	
2	남태령주유소	과천대로 838	(주)대농석유	2016.07.15	휘발유 40,000 X 3 경 유 40,000 X 3	
3	대우주유소	양재대로 178	(주)대신석유	2016.11.25	휘발유 30,000 X 5 경 유 30,000 X 1	
4	서초제일주유소	사임당로 116	SK네트웍스	2016.12.12	휘발유 30,000 X 2 휘발유 10,000 X 1 경 유 30,000 X 1 경 유 20,000 X 1	
5	양재현대주유소	마방로 6	김현정의1인	2017.02.02.	휘발유 40,000 X 2 경 유 40,000 X 2 등 유 40,000 X 1	

【 조치사항 】

○ 위험물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 사항은 관계법규에 따라 시정조치 하기 바라며, 119행정정보시스템의 제조소등 관리대장을 자세하게 입력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감사결과 처분요구

26					
기관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원)	
서초소방서 <small>(예방과, 현장대응단)</small>	2017년	주 의			
제 목	<b>화재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화재발생 다중이용업소 확인 점검 소홀</b>				

**【내 용】**

□ 서초소방서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대 및 관계자 등에 의하여 소화활동이 행하여진 장소에 대하여 화재원인을 규명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자 질문, 현장확인, 감식, 감정 등을 통해 정확하고 과학적인 화재조사를 실시하는 등 화재가 발생한 대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7조(조사결과 보고)에 의하면, 긴급상황보고에 해당하는 화재는 화재 각지로부터 15일 이내(다만, 화재의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기간이 필요한 때는 총 30일 이내), 긴급상황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 그 밖의 일반화재는 화재 각지로부터 10일 이내에 화재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규정된 조사기간을 초과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사전보고 후 추가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현장대응행정편 16. 화재조사 전문화 및 화재 통계관리에 의하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대상 등 화재취약대상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방과 등 관련부서에 전파하여 소관부서에서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① 현장대응단에서는 2015.11.03. 14:44 서초구 방배로13길 15 소재 오정빌딩 내 파라곤웰빙고시원 등 29개소의 화재발생 대상에 대하여 소방청 훈령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규정된 조사기간을 초과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보고 한 후 조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나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기한을 경과하여 화재조사

## 결과를 보고함.

### ○ 화재조사 결과보고 기한 경과 내역

연번	화재발생일	대상명	위치	보고일자	경과일수	담당자	감독자
1	2015-11-03 14:44	오정발달내 파라곤웰빙고시원	방배로13길 15	2015-11-24	10	신찬호 손홍성	임상순
2	2016-01-14 6:20	일반음식점	사임당로 46	2016-02-11	18	신찬호 손홍성	임상순
3	2016-02-01 17:49	해성빌딩	효령로 183	2016-02-23	11	신찬호 손홍성	임상순
4	2016-02-02 7:08	승합자동차(현대트라젯)	반포대로 275	2016-02-25	13	손홍성	임상순
5	2016-02-10 1:57	간이 음식점	원터2길 4	2016-03-07	16	신찬호	임상순
6	2016-03-18 18:28	한국교총회관	태봉로 114	2016-04-11	13	신찬호 손홍성	오경관
7	2016-03-27 2:01	현대슈퍼빌 오피스텔	서초중앙로 15	2016-04-19	13	신찬호 손홍성	오경관
8	2016-04-01 12:22	하수로	방배중앙로 18	2016-04-22	10	신찬호 손홍성	오경관
9	2016-04-01 14:22	일반건물	양재천로23길 9	2016-04-22	10	신찬호 손홍성	오경관
10	2016-04-06 21:28	뚝방길	남부순환로342길 100-9	2016-04-29	12	신찬호 손홍성	오경관
11	2016-04-08 21:22	전신주 전선	방배로31길 28	2016-04-29	10	신찬호 손홍성	오경관
12	2016-04-18 19:30	승용차량(K3)	양재대로12길 73-71	2016-05-09	10	백석현 이길수	이재동
13	2016-06-07 0:36	도일빌딩	서초중앙로 138	2016-07-01	14	신찬호	오경관
14	2016-10-23 10:05	서초LH3단지 지하 주차장	양재대로2길 34	2016-12-01	29	박상길 채정희	방성현
15	2016-10-25 2:23	미주프라자	방배로 39	2016-11-22	18	백석현 이길수	공병렬
16	2016-11-23 17:18	내곡동 비닐하우스	현인릉2길 38	2016-12-15	11	박상길 채정희	방성현
17	2016-11-28 9:30	신동모터스건물	마방로4길 6	2016-12-19	11	백석현 이길수	공병렬
18	2017-03-01 17:25	세굴라하우스	효령로43길 22	2017-03-22	11	신찬호 손홍성	오경관
19	2017-04-08 16:33	야외 잔디	태봉로2길 65	2017-05-04	16	신찬호 손홍성	오경관
20	2017-04-12 14:40	야외공터 잔디	태봉로2길 65	2017-05-03	11	신찬호 손홍성	오경관
21	2017-04-14 11:00	흑돈가	서운로 133	2017-05-12	18	신찬호 손홍성	오경관
22	2017-04-23 15:54	라이온스빌딩 외벽	강남대로 160-2	2017-05-18	15	신찬호 손홍성	오경관
23	2017-04-25 5:21	리젠타워	강남대로 463	2017-05-18	13	박상길 채정희	권희섭
24	2017-04-25 21:08	현대ESA2아파트 외벽	반포대로 122	2017-05-19	13	신찬호 손홍성	오경관
25	2017-05-07 0:36	반포주공1단지 32동앞 이면도로상	도로명주소 없음	2017-06-02	17	박상길 채정희	권희섭
26	2017-05-16 20:51	현대슈퍼빌	서초중앙로 15	2017-06-06	11	신찬호 손홍성	오경관
27	2017-05-25 20:22	피자투어	강남대로8길 10	2017-06-15	11	채정희	권희섭
28	2017-06-03 15:23	현대 탑차(2.5톤)	강남대로2길 10	2017-06-26	13	백석현	공병렬
29	2017-08-29 9:13	안완건물 우면동2-5건물	바우피로 16	2017-09-19	11	이우주	강기홍

② 예방과에서는 2015.11.03. 14:44 서초구 방배로13길 15 소재 파라곤 웰빙텔고시원 등 6개소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발생 사실을 현장대응단

으로부터 통보 받았으나 영업장의 실내장식물 변경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의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확인 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대상 확인점검 미실시 내역

연번	화재발생일	대 상	위 치	예방과 통보일자	담당자	감독자
1	2015.11.03(화) 14:44	파라곤웰빙텔 고시원	방배로 13길 15	현장대응단-8265(2015.11.10)	김규태	홍성모
2	2015.11.04(수) 17:23	더리버사이드 (2층더가든치킨)	강남대로 107길 6	현장대응단-8264(2015.11.10)	〃	〃
3	2015.12.09(수) 01:58	1.6바	방배중앙로 27길	현장대응단-9281(2015.12.11)	〃	〃
4	2015.12.18(금) 19:32	BARA BAR노래방	강남대로 212	현장대응단-9563(2015.12.20)	〃	〃
5	2016.01.08(금) 07:58	코아원룸텔	방배중앙로 15길 41	현장대응단-191(2016.01.09)	〃	〃
6	2017.08.25 20:33	레인보우	서초대로 75길 36	현장대응단-6909(2017.09.01))	최수영	임상순

【 조치사항 】

- 재난관리과 및 예방과에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직무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감사결과 처분요구

27					
기관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원)	
서초소방서 (현장대응단)	2017년	통보			
제목	<b>화재현장 출동보고서 작성 소홀</b>				
<p><b>【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초소방서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대로 하여금 소화활동이 행하여진 장소에 대하여 화재출동 대원은 출동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제반 규정의 기준에 따라 화재발생 관련 사후조치를 이행하고 있다.</li> <li>□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9조(화재출동시의 상황과약)에 의하면 화재현장에 출동하는 직원은 출동 중에도 조사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화재현장에서도 소방활동을 통한 상황과약을 하여 조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하고 119안전센터 등의 선임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화재시 지체 없이 화재현장 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화재현장 출동보고서 작성 기준(재정비) 시달(서초소방서-6088호/2015.08.28.)에 의하면 서초소방서에서는 각 안전센터 내 화재출동 대상 중 『완진』 처리된 모든 화재(자체진화 대상 포함)에 대하여 출동보고서를 작성(국가화재정보 시스템 입력)하여야 한다.</li> <li>□ 현장대응단 및 잠원·양재·서초·방배안전센터에서는 2015.11.27. 13:42 서초구 법원로2길 17-6 소재 형덕빌딩 등 31개소의 화재발생 대상에 대하여 화재조사 보고규정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화재현장 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기한 내에 화재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조사관에게 제출(국가화재정보 시스템 입력)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 내역과 같이 화재현장 출동보고서를 작성 제출(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입력)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31개소의 대상 중 2개소를 제외한 29개소는 자체진화 처리된 화재로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화재접수 등록 후 출동시간 및 출동대 편성 등의 내용 외에 중요한 기재 사항이 없음에도 화재조사 보고규정에는 출동</li> </ul>					

보고서에 관한 별도의 작성 제외 기준이 없으며 이후 화재조사 보고규정의 개정이나 별도의 지침 등이 수립되는 시점까지 화재현장 출동보고서는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 화재현장 출동보고서 미작성 내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미입력 내역)

연번	화재발생일	상호명	위치	소관부서
1	2015-11-27 13:42	형덕빌딩	법원로2길 17-6	잠원안전센터
2	2015-12-05 10:08	단독주택	강남대로109길 45-8	잠원안전센터
3	2016-02-24 22:32	선창빌딩	논현로19길 9	양재안전센터
4	2016-08-25 14:37	스페셜 스튜디오	신흥안길 40-15	양재안전센터
5	2016-10-29 6:15	빌라	동산로19길 40-9	양재안전센터
6	2016-04-19 2:45	대광빌딩 1층	남부순환로315길 100	서초안전센터
7	2016-08-17 15:40	동갑빌딩	현장대응단대로28길 69	서초안전센터
8	2016-10-20 12:16	황성현건물	서초중앙로6길 21	서초안전센터
9	2016-12-02 11:41	금석빌딩	서초대로42길 23	서초안전센터
10	2017-03-13 15:50	에이스센터	서초대로54길 28	서초안전센터
11	2017-08-26 14:36	금성65빌라	남부순환로347길 21-17	서초안전센터
12	2017-09-06 20:23	제이스튜디오건물	서초중앙로12길 14	서초안전센터
13	2017-10-24 11:20	1008호	현장대응단대로14길 71	서초안전센터
14	2016-12-26 20:59	다세대주택	방배천로4안길 76-5	방배안전센터
15	2017-01-06 22:52	음식점앞 수족관	방배천로2길 15	방배안전센터
16	2017-03-20 18:16	미소짓는 하루 미용실 건물	방배천로4안길 26	방배안전센터
17	2017-07-05 19:04	승용차량(코란도)	효령로 131	방배안전센터
18	2017-10-16 11:47	도로상 전신주	명달로 42	방배안전센터
19	2015-12-12 17:14	치킨집(통닭가)	동광로 33	현장대응단
20	2016-03-21 5:55	미성빌딩	사평대로26길 48	현장대응단
21	2016-03-28 16:51	빌라 301호	사평대로6길 109-9	현장대응단
22	2016-08-02 0:55	공동주택	사평대로22길 65	현장대응단
23	2016-08-28 22:14	상은빌딩	현장대응단대로39길 38	현장대응단
24	2017-01-05 18:00	지하철 3호선 역사 내	신흥대응단으로 188	현장대응단
25	2017-01-31 15:17	금강슈퍼	사평대로10길 5	현장대응단
26	2017-03-13 13:36	야외	방배로 174	현장대응단

연번	화재발생일	상호명	위치	소관부서
27	2017-03-22 18:35	원조 할아버지아구찜	방배중앙로 196	현장대응단
28	2017-05-23 8:38	달님맨션	동광로3길 106	현장대응단
29	2017-06-28 13:58	승용차량	현인릉길 9	현장대응단
30	2017-08-30 20:20	조충행건물	방배중앙로 163	현장대응단
31	2017-10-28 20:53	현대아트빌	동광로1길 61	현장대응단

**【 조치사항 】**

- 현장대응단에서는 자체진화 처리된 화재발생건에 대하여 화재현장 출동보고서를 작성하되 관련 기준이 별도로 수립되는 시점까지 작성여부를 본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

# 감사결과 처분요구

28					
기관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원)	
서초소방서 <small>(소방행정과, 양재)</small>	2017년	시정			
제목	퇴직자 등 개인보호장비 반납 및 공기충전기 가동 점검 소홀				

## 【내용】

□ 서초소방서에서는 현장활동 대원의 재난현장 활동시 각종 위해 요인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개인보호장비를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여 대원의 신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화재 등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에 사용하는 공기호흡기 용기에 호흡용 공기를 충전하기 위하여 2대의 공기충전기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다.

□ ㉠ 소방장비관리규칙 제16조(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등)에 의하면 소방기관의 장은 언제든지 소방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하였을 때에는 개인보호장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7조(소방장비의 관리 전환 및 반납)에 따라 개인보호장비를 지급받은 소방공무원이 다른 시·도의 소방기관으로 전보되는 경우에는 반납을 받거나 불용결정 후 양여하는 절차에 따르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개인보호장비를 반납한 후 그 내역을 119행정정보 시스템에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 소방장비관리규칙 개정(2016.07.01. 시행) 전에는 무상양여 조치 없이 반납 하도록 되어 있음.

㉡ 호흡보호장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제7조(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에 의하면 공기충전기는 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 후 사용시간 및 제반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를 점검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하고, 주요장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1주일에 최소 30분 이상을 가동하여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도록 되어 있다.

□ ① 소방행정과에서는 2015.12.31. 퇴직한 소방위 조홍섭 등 3명의 직원에 대하여 개인보호장비를 반납 받아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반납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며, 2017.05.08. 타 시·도의 소방기관으로 전출한

소방교 임명식 등 4명의 직원에 대하여 개인보호장비를 반납 받거나 불용처분 후 무상 양여 조치를 감사일 현재까지 처리하지 아니하는 등 퇴직 및 타 시·도의 소방기관으로 전출한 직원에 대한 개인보호장비 관리 조치를 소홀히 함.

○ 타 시·도 전출자 및 퇴직자 개인보호장비 조치 내역

연번	소속	계급	성명	전출일자 (퇴직일자)	반납일자 (근거 문서번호)	반납 품목	수량 (착)	전출 시·도 /퇴직사유	담당자	감독자
1	잠원	소방위	조홍섭	2015.12.31.	반납조치 안됨	- 특수방화복 - 소방헬멧	1 1	정년퇴직	김경표	김선기
2	현장대응단	소방교	임명식	2017.05.08.	반납 또는 무상양여 조치 미이행	- 특수방화복 - 소방헬멧	1 1	전라북도	구경서	강병욱
3	현장대응단	소방교	이수아	2017.05.08.	반납 또는 무상양여 조치 미이행	- 특수방화복 - 소방헬멧	1 1	경상북도	구경서	강병욱
4	현장대응단	소방경	신찬호	2017.08.31.	반납조치 안됨	- 특수방화복 - 소방헬멧	1 1	명예퇴직	김복운	강병욱
5	서초	소방경	김우중	2017.10.31.	반납조치 안됨	- 특수방화복 - 소방헬멧	1 1	명예퇴직	김복운	강병욱
6	소방행정과	소방경	공병렬	2017.11.15.	반납 또는 무상양여 조치 미이행	- 특수방화복 - 소방헬멧	1 1	소방청	김복운	강석일
7	소방행정과	소방경	강병욱	2017.11.15.	반납 또는 무상양여 조치 미이행	- 특수방화복 - 소방헬멧	1 1	중앙119 구조본부	김복운	강석일

② 양재안전센터에서는 2017.02.01.~09.03. 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공기충전기에 대하여 24주간(24회)에 걸쳐 기준시간(1주일 30분 이상)에 미달하여 가동 점검을 실시함.

○ 공기충전기 1주일 30분 이상 가동 미실시 내역

연번	소속	점검기간	가동시간	담당자	감독자
1	2017.02.01.-02.05.	02.01.-02.05.	8	임병섭, 최장호, 김경환 박태민, 조노직, 박종욱	마행렬
2	2017.02.06.-02.12.	02.06.-02.12.	12	〃	〃
3	2017.02.13.-02.19.	02.13.-02.19.	12	〃	〃
4	2017.02.20.-02.26.	02.20.-02.26.	12	〃	〃
5	2017.02.27.-03.05.	02.27.-03.05.	12	〃	〃
6	2017.03.06.-03.12.	03.06.-03.12.	12	〃	〃
7	2017.03.13.-03.19.	03.13.-03.19.	12	〃	〃
8	2017.03.20.-03.26.	03.20.-03.26.	12	〃	〃
9	2017.04.03.-04.09.	04.03.-04.09.	12	〃	〃
10	2017.04.10.-04.16.	04.10.-04.16.	12	〃	〃
11	2017.05.01.-05.07.	05.01.-05.07.	12	〃	〃
12	2017.05.08.-05.14.	05.08.-05.14.	12	〃	〃
13	2017.05.15.-05.21.	05.15.-05.21.	21	〃	〃
14	2017.05.22.-05.28.	05.22.-05.28.	12	〃	〃



연번	소속	점검기간	가동시간	담당자	감독자
15	2017.05.29.-06.04.	05.29.-06.04.	12	ㄴ	ㄴ
16	2017.06.19.-06.25.	06.19.-06.25.	12	ㄴ	ㄴ
17	2017.06.26.-07.02.	06.26.-07.02.	12	ㄴ	ㄴ
18	2017.07.03.-07.09.	07.03.-07.09.	12	ㄴ	ㄴ
19	2017.07.10.-07.16.	07.10.-07.16.	12	ㄴ	ㄴ
20	2017.07.17.-07.23.	07.17.-07.23.	12	ㄴ	ㄴ
21	2017.07.31.-08.06.	07.31.-08.06.	12	ㄴ	ㄴ
22	2017.08.07.-08.13.	08.07.-08.13.	12	ㄴ	ㄴ
23	2017.08.21.-08.27.	08.21.-08.27.	12	ㄴ	ㄴ
24	2017.08.28.-09.03.	08.28.-09.03.	12	ㄴ	ㄴ

**【 조치사항 】**

- 소방행정과에서는 퇴직자 3명 및 타 시·도 전출자 4명에 대한 개인보호 장비를 반납 또는 무상양여 한 후 119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입력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직무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